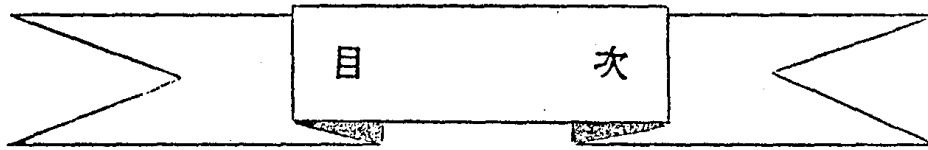


1.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自体研究報告書임.
2. 收錄된 內容은 共產圈의 實態把握을 위한 研究에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蘇聯의 全人民의 國家論에 관한 研究

研究執筆責任者 金 炳 國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一. 序 說	3
二. 従来의 憲法 概觀	7
三. 新憲法의 内容과 問題	15
四. 蘇聯의 現在와 未來 — 全人民의 國家論의 背景	21
五. 全人民의 國家論에 대한 蘇聯의 論拠	28
六. 結 語	37

※ 附 錄：蘇聯 新憲法
中共 新憲法

一 . 序 說

“蘇聯은 어떻게 될까?” — 이것은 지금 세계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이다. 혁명 후 60여년을 경과한 蘇聯은 世界第2의 공업국으로 부상하였다. 東歐에는 수개의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어 이제는 소련은 과거에 생각하였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위협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러시아 혁명의 하나의 목표는 달성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또 하나의 중대한 목표 즉 “사회주의”의 궁극의 목표인 공산주의로의 완성을 내걸고 출발한 나라였다. 착취도 억압도 없으며 자유로운 인권이 존중되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그런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는 異論이 많다. 60여년에 그런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는 그런 변명도 있다. 그러나 같은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근년에는 소련과 떨어져 나갔으며, 西歐의 공산당은 “유로-코뮤니즘”이라고 칭하고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소련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떠났다가 보다는 「소련이 본래의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離反하였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소련 내부에서도 많은 反體制 그룹과 혁명 60년의 현실이 예상했던 이상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많다. 여하튼 蘇聯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국가로서, 1917년 10월 혁명 후 60여년이

지났으며 혁명 이전의 소련은 낙후된 자본주의국가, 특히 농업에 주로 의존하는 농업국이었는데, 어쨌든 그 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지금은 세계 제 2의 공업국으로 등장하였으며 또한 사회주의국가내에서도 스스로를 “發展된 社会主义国”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낙후된 사회주의국가와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 본다면 확실히 10월 혁명후의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으로 특징지워진다.

(1) 경제적 후퇴성 ; 러시아에서는 小農과 手工業에 의한 생산이 압도적이었으며 실제로 대규모로 볼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었다.

(2) “볼셰비키” 지도부의 이론상의 사고방식이 新國家權力의 形式 및 그 後의 社會全體의 變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제국의 경제가 부분적으로 상품교환의 확대를 필요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자급자족적으로 二重의 혼란 속에서 또 선진과 후진의 문화체제 및 국민적 패배감 속에 빠져있던 것이 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러시아 상황임에는 틀림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볼셰비키를 중심세력으로 하여 10월 혁명이 성공하였고 그리하여 공산주의자에 의한 정권장악 후 처음으로 의식적인 혁명적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변화는 물론 필연적으로 본질적인 공산당 지도자들의 이론적 방식에 의하여 이 틀이 鑄型된 것이었다. 중앙에 의한 경제관리가 근대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생산에서 분배에의 과정을 결정하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의 직접적인 결합을 시켰다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혁명후 러시아의 변혁은 「全聯邦共産黨」(볼셰비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1차적인 기본성격은 푸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었다. 소련방의 공산당은 1917년 11월에 「소비에트」정권 수립 이래 줄곧 「소비에트」 사회의 추진세력 내지 지도세력으로 서 국내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여 결국 소련방으로 하여금 1936년 11월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케 하였고 1959년 1월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완전하고도 최종적 승리를 거두고 공산주의의 단계적 건설기에 돌입」케 하였고, 1961년 10월에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국가로 부터 전인민의 사회주의국가로」 또한 그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 부터 전인민의 전위대로」 각각 성장하였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호루시초프」 시대인 1961년 10월에 개최한 제 22회 공산당대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공산당규정에 있어서 공산당의 성격으로서는 「노동자계급, 「콜호즈」 농민 및 「인테리겐차」의 선진적이고 가장 의식적인 부분을 결합하는 「소비에트」 인민의 전투적인 시련을 거친 전위대」로 규정되고 그 임무로서는 「공산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한다. 공산당은 사회, 정치조직의 최고형태로서 소비에트 사회를 지도하고 추진하는 힘이다.

………」 이와 같이 공산당의 성격규정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서 소련헌법도 새로이 개정하여 「푸로레타리아」 독재국가에서 「전인민의 국가」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러면 과연 소련이 내세우는 「전인민의 국가」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법체제적·이념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의 소련은 어떤 향방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찰한다.

二. 從來의 憲法 概觀

1917년 10월 피의 「러시아」혁명이 일어나 소위 공산주의를 표방한 「소비에트」 국가가 탄생한지 60여년이 지나갔다.

이 60여년간에 소련은 그 정치체제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헌법을 네번이나 개정하였다.

최초의 헌법은 1917년 10월 혁명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1918년 7월 10일에 채택된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소비에트 공화국헌법」이다. 이 헌법은 「10월 혁명」에 의해 수립된 부르주아타리아독재국가들을 법적으로 확고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후일에 「레닌」헌법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최초의 「러시아공화국헌법」은 우선 그 제1편에 「근로하면서 착취되는 계급의 권리선언」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 쳐들었으며, 그 제1조에서는 「러시아가 근로자, 병사 및 농민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소비에트공화국」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1918년 1월 21일의 제3회 러시아 노동자, 병사 대의원 소비에트대회에서 채택되어 同月 18日의 제3회 소러시아 노동자, 병사, 농민대의원 소비에트대회에서 재차 채택된 同名의 권리선언과 그 골자를 같이 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철폐, 인민의 계급에 의한 구별의 전폐, 착취자에 대한 억압,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사회주의 사회 全域에 있어서의 승리(제3조)등을 규정하였다.

제 2 편 이하에서는 국가통치의 기본이 정하여졌다. 그 이외에 주목되는 것으로는 과도기에 있어서 헌법의 근본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푸로레타리아 및 極貧의 農民의 독재를 설립하는 것이다. (제 9 조) 전권력은 도시 및 농촌의 소비에트에 결합된 러시아 전노동계급에 속한다 (제 10 조)

푸로레타리아독재의 과도기에 있어 재정정책은 부르조아지의 재산몰수 및 부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전시민의 평등에 필요한 조건의 준비를 조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지방적, 국가적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소비에트 권력기관의 관리 아래 둔다 (제 79 조)는 규정 이 있다.

물론 그에 따라서 헌법은 혁명직후에는 푸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기 위하여 가차 없는 탄압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 노동자 계급이 전권력을 장악하고, 착취자가 권력을 다시 회복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노동자가 무장하는 것, 사회주의 赤軍이 組織되는 것 및 부르조아지계급은 무장해제되는 것 (제 3 조) 기타 전인민에 병역 의무제를 과하는 한편 무기를 가지고 혁명을 지켜야 할 명에는 근로자계급에 부여하고, 비근로분자에게는 그 이외의 軍務에 從事하도록 하는 것, 일반적으로 利潤의 獲得을 目的으로 고용노동을 이용하는 자 및 노동을 하지 않고 수입을 獲得하는 者 에컨대 資本에 對한 利子 등과 같이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으로 生活하는

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제 65조)고 한 규정들이 주목된다.

혁명후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것은 당시는 소위 戰時 공산주의 시기에 있어서 소비에트정권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데-카」라 칭해지는 강력한 소련시아 反革命·怠業的取締非常委員會가 国内的 治安을 맡고 또 資本主義의 용인을 의미하는 신경제정책(NEP)을 채택하여 경제행위에 있어 難局을 타개하고 더 나아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을 締結하여 어쨌든간에 獨逸과 終戰에 이르렀다. 위에서 말한 「데-카」는 비밀재판으로서 무서운 「게·베·우」의 前身이다. 「게·베·우」는 다시 1954년 3월에 「카·게·베」 국가보안위원회로 개조되었다.

또 신경제정책은 남세후에 있어서 잉여농산물의 자유처분, 자유시장의 개설, 상업, 소공업의 私營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방식에 있어서는 경제체계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우기 「브레스토·리토프스크」조약의 체결은 소련에 있어서는 굴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22년경에는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렇저렇 수습하였으며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서 성립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제카프카즈

와 러시아공화국이 합병하여 1922년 12월에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이 결성되었다. 그리하여 1923년 7월 6일의 연방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해인 '24년 1월 31일의 「제2회 연방소비에트」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레-닌」 헌법이다.

「레-닌」헌법은 연방의 혁명적개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자본주의로 부터 사회주의에의 이행기에 시행된 헌법으로서의 위치를 점한다.

이 「레닌」 헌법은 대분하며 제1편 「소련방의 결성에 관한 선언」 및 제2편 「소련방의 결성에 관한 조약」으로 성립되어 특히 제1편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여 自畫自讚하고, 자본주의사회를 통렬히 비판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에컨대 그 서두에서 「소비에트공화국이 형성된 이래 세계는 2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민족적 敵意와 不評등 식민지적 노예제도와 맹목적 애국주의, 민족적 억압과 학살, 제국주의적 착취와 戰爭이 지배하고, 타방 사회주의 진영에 있어서는 상호의 신뢰와 평화, 민족적 자유와 평등, 인민의 평화적 공존과 형제적 협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자본주의의 포위하에서 전시공산주의를 투쟁적으로 발동시키는 강한 자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同 선언의 최후의 부분에 있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세계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확고한 防禦으로서 존립하고

한편 만국의 노동자가 하나의 세계적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결합하기 위한 결정적 제일보를 감히 내디디려 하는 것이다」는 문언은 세계혁명을 표방하는 것으로서,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的 方法과 比較할 때 흥미있는 것이다. 그 후 이 憲法은 国内的(예컨대 5個年計劃의 實施 그에 따른 行政機構의 改革, 스탈린정권의 安定強化), 國際的(예컨대 제외국과의 외교, 통상관계의 활발화, 국제연맹에의 가맹) 變化에 적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으며 그러나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격변하는 사회에 対応할 수 없게 되자 그에 따라 신헌법제정의 동기가 표면화되었다.

신헌법제정의 동기는 우선 1935년 2월 1일의 공산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또 이어서 연방소비에트대회에의 제출(동년 2월 6일), 헌법위원회(의장에 스탈린)의 헌법개정초안의 기초(36년 5월 15일) 공산당중앙위원회의 승인(36년 6월 1일), 인민토의(약 5개월) 등을 거쳐 36년 12월 5일의 제 8회 임시 소비에트에서 채택된 것이 「스탈린」헌법이었다. 이 「스탈린」헌법은 소련방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시기에 적합한 것으로 소련방에 있어서 소위 착취자계급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고정화한 것으로서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레닌」헌법과 비교해보면 자본주의에 대하여 도전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고 완화된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에컨대 제 1 조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한 규정은 「스탈린」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건설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결과 노동자, 농민 이외엔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또 그 정치적 기초를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승리의 결과로서 성장·발전한 견고한 근로자 대의원 소비에트」(제 2 조)에 경제적 기초를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의 청산, 생활요구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의 폐지 및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없앤 결과로서 확립된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및 생활요구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 4 조)에 있다고 하였으며, 또 사회주의적 노동에 관하여 「노동하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 「각인은 그 능력에 응하여 각인에게는 그 노동에 의하여」라는 원칙이 명기되었다.

이 「스탈린」 헌법 그 후의 시대적 발전에 적합하기 위하여 대단히 수정을 받게 되었고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완료가 공산주의로의 이행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또다시 근본적인 개정이 고려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소련은 1977년 6월 4일에 공표된 신헌법 초안을 4개월에 걸쳐 전인민의 토의를 끝내고 수정을 가하여 동년 10월 7일 소련 최고회의에서 旧 「스탈린」 헌법을 대신하여 「소련을 사회주의적 전인민국가」로 규정한 새로운 헌법 소위 「브레즈네프」 헌법을

채택하였다.

이 새로운 헌법 제정의 동기는 지난 1961년 10월의 제 22회 당대회에서 당시의 후루시초프 서기장에 의해 언명되고 1962년 4월에는 신헌법 기초를 위한 위원회 설치가 채택되어 후루시초프를 그 의장으로 하여 9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64년 10월에 후루시초프가 실각됨에 따라 (그와 더불어 33명이 후루시초프와의 관계로 해임되었음) 브레즈네프가 의장이 되어 심의를 진행시켰는데, 15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 그 신헌법 초안이 공포된 것이다. 이 15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처음의 기대와는 상당히 괴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어쨌든 1936년의 스탈린 헌법 제정이래 40여년간 소련방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 및 국제적인 지위에 많은 변화의 필연적인 산물로서 그간 공산체제하의 소련사회가 경험한 변화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비록 위에서 소련의 각헌법의 변천과정을 개관하였지만 아래의 2가지 점이 큰 특색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제일로 헌법개정의 과정에 있어서 모두 공산당의 의향이 선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번의 헌법개정에 있어서도 그 초안의 기원은 61년의 제 22회 당대회에 있어서 후루시초프의 발언이 그 "불씨"적 역할을 하였으며, 스탈린 헌법의 제정도 공산당중앙위원회 총회의 결정이 발단이였다.

제이로는 그러한 헌법들이 제정후의 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빈번

히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레닌헌법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또 스탈린헌법하에서도 1953 ~ 69년까지 16년간에 걸쳐 무려 31 회나되며 실로 1년에 2회 정도의 헌법개정이 행하여졌다.

(이것은 "현대세계의 헌법제도"에 수록된 세계 각국의 헌법언표를 参照하여 調査한 것임)

이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입장에 설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것이라할 것이다.

또 다른면으로 分析해보면 이러한 蘇聯憲法の 現實은 第4次에 該當하는 「브레즈네프」憲法이 이런 蘇聯社會의 現實의 연속적 반영에 불과한 것이지 과거와 확연히 區別되는 새로운 이상이나 구호의 표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헤겔식의 표현으로 「양의 變化가 질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그런 轉機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전인민의 國家」를 논함에 있어서는 러시아 혁명 60여년이란 세월 속에서 蘇聯社會主義의 變化 내지 發展과 關聯시켜 이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

三. 新憲法의 內容과 問題

蘇聯의 新憲法 소위 「브레즈네프」憲法은 前文과 9부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특히 憲法的 特性和 關聯되는 것 「前文」, 「제 1부 社會的, 政治的 및 經濟的 構造의 基本」 「제 2부 國家와 個人」 및 統治機構를 定한 「제 4부」와 「제 5부」를 중심으로 하여 「全人民의 國家論」에 關하여 高찰한다.

우선 前文은 과거 「스탈린」憲法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新設되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소비에트」權力은 근로대중을 위한 진정한 民主主義를 確立하는 것과, 「소비에트」權力은 「푸로레타리아」獨재를 遂行하는데 있어서 「全人民的」이라는 것과 소련방에는 發達된 社會主義가 건설되어 그리하여 그 發달된 社會主義는 共產主義에 向하는 道상의 合법적 단계에 있다는 것과 「소비에트」國家의 最高목표는 階級이 없는 共產主義를 建設하는 것이며 그를 위한 國家의 重要한 과제는 物質적, 技術적 기초의 充實과 人間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전인민국가론」에 있어서는 1961년에 채택된 「소련방 공산당강령」에 쓰여진 바와 같으며, 본문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 1조 및 제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노동자계급, 농민 및 인테리겐차 國內의 모든 민족의 의사와 이익을 實現하는 社會主義的 全人民 國家이다.」

「소련방에 있어서 전권력은 人民에게 부여되어 있다」

(스탈린 憲法에서는 전권력의 귀속은 도시 및 농촌의 근로자에 있다고 하였음)

이에 對하여 全人民의 國家는 푸로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착취 階級을 배제하는 것을 達成한 發달하고 성숙한 社會주의 社會의 단계에 있으며, 푸로레타리아독재가 그 名을 마치고 共產主義 社會가 完全히 승리할 때까지의 과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인민적국가」를 생각해 볼 때 맑스·레닌주의에는 존재하지 않는 概念인 것으로 그에 대하여 中共으로부터 비판되어지고 있다.

예컨대 1975년에 中共의 인민출판사에서 發行한 「맑스주의의 國家論」에는 「맑스·레닌」主義의 상식을 약간이라도 지닌 사람은 「전인민의 당」 「전인민의 국가」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蘇聯의 實在은 「파씨스트」 黨의 지배하에 官僚獨점의 부르조아지 獨재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당시 中共側의 反應을 詳細히 살펴보면 신화사통신은 「蘇聯憲法이 全人民의 國家」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憲法이 푸로레타리아 階級獨재에 배치되는 것이며 자본주의를 復辟하려는 것이다」고 보도하였으며, 인민일보에서는 「관료獨점 자본가階級的 노동자 壓迫과 착취를 숨기고 國內에서의 파씨스토체제와 國외에서 의 침략확장을 숨긴 것에 불과하다」고 준엄히 비판하였다.

한편 英國의 가디언지 (1977.6.6)도 蘇聯의 「푸로레타리아

독재」를 「전인민의 국가로 언급하면서 본체는 변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수정을 施行한 新憲法은 그대로 하나의 골동품에 不 過하다」고 평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인민의 국가」가 成立되기 위하여는 모든 階層의 사람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지만 실정은 이와는 멀다.

예컨대 앞서 말한 中共의 「맑스주의의 국가론」에는 「그들 즉 후로시초프와 브레즈네프의 변질집단은 직권을 제멋대로 남용하여 蘇聯人民의 노동을 착취하고 蘇聯의 一般 勞働者나 農民과 比較할 때 수백 또는 수천배의 收入을 얻었으며 높은 임금, 높은 장려금, 높은 원고료 또는 其他 名目으로 새로운 브르쵸아지 계층을 育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全人民의 國家」 규정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내지 「人間의 尊嚴과 平等性」이란 관점에서 어떠한 內容을 包含하고 있는가, 만일 從來와 같이 소수의 집단에 맡겨져버린다면 본질적으로 그 意味나 內容에 있어서 아무런 變化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蘇聯의 現象을 「發達된 社會主義社會」라는 點에 착안하였다.

「發達된 社會主義社會」는 전문에서 「強力한 生産力, 선진적인 과학과 문화가 창조되어 國民의 복지가 증진되고 個人의 전면적인 發達이 可能한 社會」이며 「근로자의 고도의 조직성, 사상성,

의식성이 존립하는 사회」로서 「眞實한 民主主義社會」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蘇聯에 있어서 發達된 社會主義의 內實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眞實로 民主的인가 하는 점이다.

확실히 蘇聯은 1917년의 혁명시에는 후진의 농업국일 뿐만 아니라 모순된 재요소를 간직한 사회였다.

그로부터 60年後의 今日 「이윤」 概念을 도입한 經濟政策을 中心으로 하여 國民 總生産에 있어서는 美國 다음의 起大國으로 發展한 것을 事實이다.

그러나 그 내실은 「사할로푸」의 「나의祖國」에 의하면 生活水準, 의료, 주거, 其他面에서 서측제국에 比하여 많이 뒤떨어지며 그리하여 西方側 여러나라의 1人當 水準을 現在의 生活水準의 $\frac{1}{5}$ 로 줄이더라도 世界에서 가장 부유한 社會主義國家의 國民이 누리고 있는 生活水準보다 나을 것이다.

또 國民皆勞體制는 당연히 國民의 權理와 自由를 억제하게 된다.

더구나 國家의 指導者가 이데오로기의 독점성과 不寬容性의 毒性에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異端者에 대한 용서 없는 탄압이 계속 되게 된다.

「사할로푸」는 이 點에 關하여 「完全한 國家독점을 必然的으로 노예근성과 강제된 획일주의를 수반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에 關係된 狀況이 진정한 民主主義가 아닌 것은 勿論이다.

또 하나 問題가 되는것은 어떤 시점에서 「究達된 社會主義가 共產主義」에로 이행하는가가 明示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新憲法에는 구 「스탈린」憲法에 規定되어 있던 「勞動하는네 따라 먹는다」는 표현이 削除되어 있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는 逆으로 蘇聯國民이 勞動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각인은 能力에 따라 勞動하고 必要에 應하여 받는다」고 한것은 이상적인(?) 共產主義가 樹立될 때까지는 蘇聯國民은 勞動을 繼續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제 本文을 보면 제 6조의 「共產黨의 지위」에 關한 規定이 있는데 同條는 「蘇聯共產黨은 소비에트社會의 指導的, 先導的인 힘이며 그 政治制度 및 社會的 組織의 中樞이다. 蘇聯共產黨은 人民을 爲하여 存在하며 人民을 爲하여 奉仕한다……」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旧 「스탈린」憲法과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旧法에서는 第 126 條로 되어있던 것이 앞의 부분으로 옮겨왔다는데서 어떤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그 意味를 추출해 보면 共產黨의 일당독재를 말할 것도 없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당지도자 자신의 지위가 짐작된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이 共產黨의 일당독재를 강조하는 것이 「全人民의 國家」라는 명제와 모순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에서와 같이 북

수정당계를 인정하고 選舉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유로-코
뮤니즘과의 간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로 그로부터 유럽제국의 共産黨의 行動方法에는 中共으로
부터 「수정주의적, 의회주의평화로선은 혁명을 속이는 것」으로서
비판되기 시작했다)

그 위에 問題되는 것은 共産黨이 國家의 指導的 중핵에 있다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당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정치국, 그
위에 또 그 정치국을 左右할 힘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
들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현실이다.

또한 新憲法6條의 規定은 그때까지 黨指導者의 獨재제를 용인
하는 법적인 근거를 提供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黨에 그러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는 한에는 黨과 國家와의
일체화단계에 있어서 黨이 國家에 對하여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또 新憲法第173條에는 「蘇聯憲法은 最高의 法的인 힘을 갖고
있다. 國家機關의 모든 法律과 其他 法令은 蘇聯邦憲法에 의하
여 公布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蘇聯의 現實에 있어서는
당강령이 憲法에 우월하게 作用하고 있다.

四. 蘇聯의 現在와 未來 -

全人民의 國家論의 背景

法이 時代의 歷史的所産이고, 事件과 思想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할진데 그러면 社會主義革命을 최초로 성공시키고 또 그 후 發展과 더불어 소위 “發展된 社會主義社會”로서 “全人民의 國家論”을 主張하는 蘇聯은 대관절 어떠한 사회이며 앞으로 어떠한 사회로 변모될 것이냐 하는 質問이 항상 있을 수 있으며 이에 對한 解答없는 그 나타난 思想과 事件의 실체 여기서는 “全人民의 國家論”에 對한 主張의 本체가 무엇인지 正確한 이해가 힘들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혁명이 성공한 후 「소비에트」社會에 關하여 蘇聯의 内外에서 莫大한 양의 現代분석과 미래예측이 行하여졌으나 만족할만한 現象의 說明은 극히 드물었으며 將來의 예측도 正確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事實의 일단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러시아」가 現代의 「소비에트」는 지극히 복잡하고 특이한 環境의 혼합체로서 構成되어 있는데다가 現代의 「소비에트」속에 과거의 러시아가 유기적으로 結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상호융합하여야만 비로소 蘇聯의 本質을 概括적으로 把握할 수 있고 또한 그의 行動도 豫測 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蘇聯의 政治에 있어서 그의 指導理念으로서 「맑소」主義의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주창하고 있지만 現實적으로 볼 때 그의 「이데올로기」的 意義는 漸次的으로 쇠약해지고 있음은 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맑소」主義 이데올로기의 사실적기능이 「소비에트」體制에 있어서 의연히 <결정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蘇聯 및 蘇聯圈의 불가결의 통합원리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蘇聯圈 住民의 심리과정을 規定하고 그의 행동에 본질적인 影響을 미치고 있는 實情이다. 이렇게 볼 때 상호모순된 2중성이 現代의 蘇聯 政治形態 現實에 나타나 있으며, 그것이 蘇聯 指導層의 당면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1. 現在의 蘇聯社會의 特質

첫째, 社會主義社會로서의 特質

蘇聯의 政治家와 학자는 現在의 蘇聯社會를 社會主義社會라고 規定짓고 있다. 보다 正確하게는 現在는 社會主義社會를 完了하고 共產主義社會로 점차 이행되어가고 있는 <發展된 社會主義> 社會라고 말한다(소비에트 공산당강령 1969年)

또한 社會主義社會란 生産도구와 生産수단이 公유의 形態(全人民的 所有의에 「콤파즈」나 其他 協同組合 등의 集團的 所有)를 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人間에 依한 人間의 착취가 없고 모든 市民의 社會的 平等이 確立되어 <각자는 能力에 따라서, 각자에게는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라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社會라고

말하고 있다.

蘇聯의 公式的 견해에 따르면 「소비에트」는 이러한 社會主義의 基礎를 1930年代에 구축하고 1960年代에 社會主義로 돌입하였다고 한다.

現在의 「소비에트」社會가 사유재산이 없는 공유를 基礎로 하여 能力에 따라 應분의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事實관계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市民의 社會的平等이 確立되어 있다고 한 점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分배의 불평등(이것은 社會主義社會에서는 계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층간의 격차로 因한 것이라 함)을 비롯하여 教育, 職業상의 권위, 지위의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市民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實質的인 불평등이 存在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그 불평등의 정도가 資本主義社會와 比較하여 그 폭이 크나, 적으나하는 問題에 不過하다.

둘째, 全体主義社會로서의 特質

全体主義社會의 特質을 ① 절대적 권력을 가진 指導者의 存在 ② 법질서, 법체제가 指導者의 指揮적인 의사에 종속 ③ 個人속에 國家의 內在化가 진전 ④ 公式的인 「독트린」, 強力한 「이데오로기」 곱을 추구하는 「비전」등이 存在하며 그것들이 民主主義的인 形態로 위장 ⑤ 과단성 있는 대중동원력의 存在 등이라할 때 스탈린 死後에는 많은 變化가 있었다고 하지만 蘇聯에 對한 一般的인 社會진단은 全体主義社會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관리사회, 단일사회, 「이데올로기」사회로서의 특질

蘇聯이 막강한 權力에 依하여 大衆을 지배하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그 지배형태가 「스탈린」時代に 있었던 것과 같은 공포와 비밀경찰을 서서히 제거하는 한편 경제적합리성을 추구하는 <위로 부터>의 계산, 명령, 조정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에 착안한 것이다. 즉 全体主義社會의 하나의 변형 「모델」인 관리사회 「모델」이 제기된다. 「E. 후름」은 그의 저서 「人間의 승리를 찾아서」에서 「소비에트」社會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蘇聯邦은 全面的인 독점화, 집중화, 대중조작(暴力에 의한 대중 조작에서 대중압제에 의한 대중조작으로 점진적 이행)이라는 方法을 최고도로 利用하는 國家管理者가 体制이다」

또한 資本主義社會와는 달리 모든 權力이 공적으로 되어 있는 社會로서 극히 소수의 집단이 정치는 물론이고 經濟, 社會, 文化 등을 단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社會」라는 면에서 볼 때 「소비에트社會」는 政治家의 사회소집단이 經濟, 文化, 軍事, 法律등의 諸般 社會集團들을 지배하고 조작하는 社會인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社會集團들로 構成되어 그 社會集團들이 서로 <접근과 작용>을 하고 있는 機械的인 社會라는 美國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넷째 大衆社會로서의 特質

C.W. 밀즈 「Power Elite」에 依하면 民主主義社會(특히 美國)나 全体主義社會(특히 蘇聯)나 할 것 없이 모든 現代社會는 원

자화된 大衆에 對한 엘리트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점에서 大衆社會라 할 수 있다.

다섯째 産業社會, (탈)工業社會

蘇聯의 산업과정, 경제발전단계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근대화 「모델」 즉 산업사회라든지 또 脫工業社會라고 하는데 이에 의하여 資本主義經濟構造와 社會主義經濟構造의 차이나 政治體制의 이질성 따위는 그렇게 問題가 되지 않고 다만 「소비에트」社會가 어떤 工業化의 段階에 位置하고 있는냐하는 점이다. 結論적으로 蘇聯은 現在 「에너지」를 토대로 하는 第2次 産業社會이며, 美國과 같이 情報를 中心으로 하는 第3次 産業社會 즉 脫工業社會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社會라 할 수 있다.

2. 蘇聯社會의 未來豫測

蘇聯의 未來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 共產主義社會로의 이행

蘇聯의 공식전해로는 現在의 <發展된 社會主義>가 共產主義로 移行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主要한 차이는 전자에 있어서는 재산의 집단소유(에컨데 콜호즈적 소유형태)를 包含하는 공유로서 <능력에 따라서 받는>社會인데 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단일의 전인민적 소유이고 <욕망에 따라서 받는>社會라고 규정하고 있다.

蘇聯의 예측으로는 소비에트사회가 1980年代에 共產主義社會로 利行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는 첫째로 蘇聯은 工業生産에 있어서 美國을 앞지르지 않으면 안된다. 집단소유가 국가소유로 되는 것이 共產主義社會라고 하는 蘇聯의 견해에 따르면 콜호즈(집단농장)形態는 머지않아 썬호즈(국영농장)形態로 이행하여야 한다. 蘇聯은 원래 「콜호즈」가 「썬호즈」로 이행한다는 理論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2年頃에 「콜호즈」와 「썬호즈」는 공존한다고 하는 理論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서 「콜호즈」의 존속은 共產主義社會에의 이행한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80年代에 蘇聯이 共產主義社會로 돌입한다고 하는 「모델」自体도 大暴的인 수정을 가하여야만 한다.

이 蘇聯側의 共產主義 이행설은 全世界가 늦거나 빠르거나 共產主義社會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蘇聯側에 수렴하는 理論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蘇聯社會가 순수한 國際的競争에서 資本主義를 억누르게 되는 훌륭한 모범을 보이게 되면 資本主義諸國이나 發展途上諸國이 平和속에 公산주의진영으로 이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다원적사회에로의 이행

社會의 근대화는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이것에 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社會가 근대화하면 分業은 점점 發達하고 따라서 國民의 社會的 지위나 역할이 다원화하며 그 지위나 역할에 부수되는 보수

에도 저절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상이한 집단이 형성되어 제각기 상이한 이익이나 「이데올로기」를 표명하게 될 것이다. 즉 일원적인 全体主義는 다원적인 사회로 변천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結果가 된다. 「이데올로기」사회가 機械的인 사회로 이행한다고 하는 생각도 基本的으로는 이 다원적 사회이행설과 다름이 없다. 「소비에트」사회의 重要의사결정에 당료들 뿐만 아니라 다른 集團, 이들에면 지식인이나 관리전문가들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엘리트」의 다원화가 機械的인 사회의 要素이다.

셋째 脱工業社会에로의 移行

W. 로스토우에 依하면 資本主義體制이거나 社會主義體制이거나 生産力의 向上이 두드러지면 「성숙에의 전진」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고도의 대중소비시대」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基礎로 하는 工業化社会에서 정보를 基礎로 하는 脱工業社会에의 이행론(D·베르)도 이러한 발전단계설의 테두리 안에서 蘇聯社会를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蘇聯도 머지않아 美国과 같이 脱工業化社会에 到達할 것으로 「베르」는 예측하고 있다.

五. 全人民의 國家論에 대한 蘇聯의 論拠

1961年 10月에 開催된 第22回 共産党大会에서 採択된 共産党規定에 依하면 共産党的 性格으로는 『勞働者階級, 「콜호즈」農民 및 인텔리겐차의 선진적이고 가장 意識적인 부분을 결합하는 소비에트 人民의 전투적인 시련을 거친 전위대』로 規定되고 그 任務로서는 「共産党은 人民을 위하여 存在하고 人民에 奉仕한다. 共産党은 社会, 政治組織의 最高形態로서 소비에트社会를 指導하고 推進하는 힘이다. 共産党은 「소비에트」人民의 創造的活動을 指導하여 中国에는 目的을 達成 즉 共産主義의 승리를 위한 「소비에트」人民의 鬪争에 組織的, 計劃的 및 科學的인 基礎를 가진 性格을 부여한다. 또 共産党은 國際共産主義 및 勞働運動의 불가분의 구성 部分으로서 「맑소·레닌」主義의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의 次元에 입각하여 모든 國際共産主義 및 勞働運動의 統一 모든 國家의 公産주의자군과 형제적 연대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主張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共産主義의 性格은 이제까지의 勞働者階級の 전위대에서 전인민의 전위대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소련방이 「노동자 계급의 독재국가」로부터 「전인민의 社会主義國家」로 성장하였다고 하는 이상, 이제까지의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 되어 있던 共産党이 「全人民의 전위대」로 성장하였다고 규정하게 된 것은 당연

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 中共側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대인 共産黨을 全人民의 前衛隊로 規定한 것은 共産黨의 역할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하여 비판하고 이것에 대하여 蘇聯側은 공산당기관지 「코뮤니스트」(1963년 9월 14호)에 게재한 論文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총로선과 중공지도부의 분렬주의 방침」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반박하였다.

즉 「共産黨이 全人民의 前衛隊로 성장하였다는 것은 共産黨의 역할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實際로는 그 反對로 共産主義建設에 있어서의 共産黨의 역할을 強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條件의 하나이다. 蘇聯邦共産黨은 現在보다 넓은 人民層에 의거하고 있으며 勞働者뿐만 아니라 「팔호즈」원도 「인텔리겐차」도 共産黨을 自己의 黨으로 생각하고 있다. 社會主義의 승리와 더불어 勞働者階級の 「이데올로기」인 맑소·레닌主義는 全人民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勞働者階級の 目的인 共産主義의 建設은 全人民의 目的이 되었다. 蘇聯共産黨이 全人民의 前衛隊로 성장한 것은 「소비에트」社會主義의 全体와 共産黨 自信의 發展의 당연한 結果이다. 政治的 組織으로서의 共産黨은 社會의 經濟的 基盤과 階級적 構造에 생기는 變化를 반영하고 있다. 全人民의 政治組織이된 共産黨이 大衆과의 結合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큰 힘을 얻어 보다 고도의 組織성을 특징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은 實생활이 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共産黨의 임무에 관하여는 國內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建設단계의 發展에 의하여 그 표현에 약간의 상이한 것을

發見할 수 있으나, 共産黨이 蘇聯邦의 궁극적인 目標인 公産주의 建設을 위한 鬪爭에 있어서의 추진력 내지 지도력으로서 「소비에트」 人民을 指導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第 22 回 共産黨大會에 있어서는 1939 年 3 月에 開催된 제 18 回 共産黨大會 이래의 현안이었던 共産黨의 신강령 즉 現行의 公産黨 강령이 採択되었으나 이 강령에 있어서는 첫째 全人民國家에 關한 規定을 新設함과 同時에 둘째 共産主義의 段階的 建設기에 있어서의 共産黨이 의도하는 내정과제를 規定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첫째 「全人民의 國家」에 關하여는 當의 신강령은 다음과 같은 規定을 두었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社會主義(共産主義 第 1 段階)의 安全하고 최종적 승리와 公産주의의 단계적 建設로의 社會의 이행을 보장하며 그 歷史的的使命을 遂行하며 國內的 發展 課題의 境지에서 보면 蘇聯邦에 있어서는 이미 不必要한 것이 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로서 발족한 국가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全人民國家 全人民의 利益 및 의사의 표시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노동자계급은 「소비에트」 社會의 가장 전위적이고 組織的인 힘이기 때문에 共産主義의 段階的 建設기에 있어서도 自己의 指導的 역할을 遂行한다. 勤勞者階級은 社會의 指導者로서 自己의 역할의 수행을 共産主義의 建設과 同時에(그때에 계급은 소멸한다) 完了한다. 共産黨은 노동자계급독재가 國家의 사멸전에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全人民의 國家에 對한 當강령은 이와 같이 간단하기 때문에

「후루시초프」서기장이 이를 보충할 의미에서 행한 설명은 全人民國家에 관한 蘇聯側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重要하기 때문에 그 요지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원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사이의 계급투쟁의 條件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단지 자본가, 지주 및 그 조력자에 대해서만 힘을 행사하나 근로자계급에 대하여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독재가 근로자계급에 자어서는 사회주의사회의 창조를 위하여 또 人間에 의한 人間の 모든 착취를 없애기 위하여 必要한 것으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기간을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의 이행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라 함은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에의 이행기의 國家이다.

이에 반하여 中共의 共產主義자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는 共產主義의 完全한 승리의 時期까지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이들은 蘇聯邦에서 성숙한 客觀的 條件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의 第1段階인 社會主義에의 이행기의 國家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에 대한 「맑스·엥겔스·레닌」의 교시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방의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社會主義的 生産에 從事하고 또한 社會, 政治的 및 思想的 關係에서 統一된 勤勞者 계급만이 현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蘇聯邦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完全하고도 최종적 승리의 후에는 하나의 계급독재를 위한 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근로자계급과 農民層의 同盟이 잔존하는 이상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잔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 農民同盟이 착취계급에 대한 鬪爭을 위하여 農業經常의 社會主義的 변혁과 농민의 재교육을 위하여 또 社會主義의 建設을 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必要로 한다는 것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가 解決됨으로써 勞動者, 農民同盟은 全人民의 社會主義國家라는 條件下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없이 순조롭게 發展하고 強化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고유한 組織的, 經濟的 및 文化的, 教育的 機能은 共產主義의 이행기에 있어서도 保持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機能은 共產主義의 時期에 있어서도 남을 것이다. 이들의 理論에 따르면 노동자계급독재는 共產主義의 段階에서도 존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全人民國家는 實생활에서 發生한 것이고 또한 그것은 政治的 社會組織에서 우리들의 노선 즉 民主主義의 全面的 發展을 表示하고 있다.

또한 全人民國家는 社會主義國家의 發展上에 있어서 새로운 段階이고, 社會主義國家가 共產主義的 社會자치로 성장하는 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리하여 全人民社會主義國家의 發展上의 重要한 方向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全面的 전개와 完성화,

國家統治, 經濟 및 文化建設의 指導에 對한 全人民의 積極적 參加, 國家機構의 活動의 改善과 그 活動에 對한 人民에 依한 統制의 強化이며, 따라서 共產主義 建設을 爲해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이미 불필요하다. 또 社會의 大多數의 利益을 表示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와 全人民의 社會主義國家와의 사이에 어떤 種類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發生의 순간부터 전반적인 社會主義的, 民主主義的 特性을 내포하고 있다. 社會主義의 發展에 따라서 이러한 特性은 強化되고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의 結果 決定的인 것이 된다. 國家는 階級 지배의 도구에서 全人民의 의사표시기관이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에서 全人民의 社會主義國家로의 성장에 關聯하여 社會 및 國家의 위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몇배나 증대한다. 그것은 從來의 힘의 원천에 새로운 힘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蘇聯側의 全人民國家論에 對하여 中共 其他 일부의 國家가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그 옳고 그름은 어떻든간에 蘇聯 那의 全人民國家論은 「후루시초프」 서기장이 현대의 「시대 인식」과 蘇聯을 둘러싼 내외정세의 評価에 따라서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發展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第22回 共產黨大會에서 採択된 現行의 蘇聯共產黨規約中에서 「蘇聯共產黨은 맑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發展시키면서 革命理論과 전혀 關係가 없는 수정주의 및 교조주의의 여하한 출현과도 단호히

鬪爭한다」고 하는 귀절에서도 볼 수 있다.

둘째로 共産黨이 의도하는 내정과제에 관하여는 現行 공산당강령은 ① 共産主義 建設의 物質的, 技術的 基盤의 造成 ②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가일층의 完善화 ③ 새로운 공산주의적 人間의 育成 등의 3 個項을 규정하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소련방이 궁극의 目標로 하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3개항(스탈린 조문중에 지적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準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가지 전제조건에 수정이 가해졌다)이 1971年 3월에 開催된 제 24회 共産黨 大會에서 繼續 답습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에도 이 과제에 관한 많은 조치가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위의 3개항으로 이루어진 내정문제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많으나, ①의 共産主義建設의 物質的, 技術的 基盤의 조성이라 함은 工場의 建設, 土地의 改良, 水의 개선 또는 資源의 開發 등을 다시 推進함과 同時에 最新과학 技術을 生産에 도입하여 물자를 풍부하게 생산하는 基盤을 조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조성에 國民經濟發展 5 個年 計劃을 遂行함으로써 漸進적으로 解決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 個年計劃의 遂行을 위하여 소련방이 總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②의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가일층의 完善화란 「소비에트」制度의 근간을 이루는 勞働者, 農民同盟의 가일층의 強化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發展을 촉진하는 일에 귀착할 것이다. 同時에 蘇聯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도시와 農村間의 격차(勞動者와 農民間의 격차를 包含)의 감축조치는 勞動者, 農民同盟에 따르는 것이고 또 國家機關의 기능의 공공단체에의 이양과 근로대중의 국정 참여 내지 協力에의 유인은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發展에 부응하는 것이다.

③의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의 育成이라 함은 고도의 정치의식, 社會에 대한 自己의 責任 및 혁명적전통과 同時에 社會主義的 愛國心 및 「프롤레타리아·인터내셔널리즘」을 체득한 人間을 育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育成이 靑少年에 對한 學校教育 내지 「이데올로기」教育을 비롯하여 一般市民 및 勤勞者에 對한 성인교육 또는 新聞, 라디오, 映畵 등의 「매스컴」에 의한 마스·레닌주의의 선전, 계몽활동 등에 의해서 推進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蘇聯의 論述에 對하여 中共은 정반대의 觀點으로 대결하였다. 1977年6月の 蘇聯 新憲法초안에 對하여 中共의 新華社 論評記事 「蘇聯憲法の 變動의 本質」은 다음과 같다.

「프롤레타리아계급독재는 社會주의헌법의 가장 基本的인 원칙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社會主義라는 名詞을 掛고 있는 憲法改革案은 公然하게 <소비에트國家는 프롤레타리아계급독재의 임무를 이미 完結하고 全人民의 國家가 되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은 社會主義의 全人民의 國家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브레즈네프도 이 헌법보고서중에서 이점을 거듭 強調하였다………
이것은 브레즈네프集團이 만들어낸 이 憲法이 프롤레타리아계급독재
를 철저하게 배반하고 資本主義를 부활시키고 있다는 表示이다.

<全人民의 國家>라는 것은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탈취한 후
표방한 것으로 이론면에서는 맑소·레닌주의에 대한 철저한 수정,
변절이며 실천면에서는 부르조아독재국가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극렬히 비판하고 있다.

六 . 結 語

蘇聯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끝나고 全人民의 國家로 發展했다는것을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蘇聯이란 現社會의 現象이 과연 어떠한 狀態에 있으며 이것이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問題로 오히려 귀속된다 할 것이다. 하여간 그것에는 두가지 의미가 包含되어 있다할 것이다. 첫째는 蘇聯에는 이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必要性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必要없을 정도로 각 계급 및 집단간의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모순도 즉 비적대적인 모순까지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全人民의 國家」에 대하여 브레즈네프가 1977年 5月 24日 蘇聯共産党中央委員會에서 新憲法改正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면 「蘇聯社會의 同質性이 強化되었다. 노동자계급, 꿀호즈농민 및 人民 인테리겐차의 同盟이 분리할 수 없도록 더욱 견고해지고 基本的인 階級집단간의 차이가 해소되어 더욱더 모든 民族과 準민족의 접근이 이루어져 소비에트 人民이란 새롭고도 歷史的인 공통성이 성립됨으로써 우리 社會는 全人民의 國家로 發展하였다」고 한 것으로 「차이의 해소」 「모순의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 「全人民의 國家」를 客觀的이고 無價值的인 社會發展

분석에 의하면 蘇聯의 共產主義體制는 (사적 자본의 청산에 의하여) 관료가 자본가계급의 권력에 굴복할 必要가 없어지고 同時에 관료를 체크하는 내외의 요소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관료층이 생겨서 관료의 未曾有의 非能率이 發生할 뿐 아니라 특히 권력이 당관료의 수중에 독점하게 되었다. 물론 예외는 있으나 하나의 特殊한 당관료가 그 發展期間中 絶對的인 政治權力에 까지 성장하여 그 權力은 거기에 종속하는 광대한 國家機構와 經濟機構에 힘입어 絶對的 支配權을 행사했다.

소비에트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이나 다른계층도 自己의 利益이나 의사를 당관료에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의 利益은 관료 자신의 利益과 一致할 때에만 認定된다. 바로 이것이 소비에트 공산주의관료의 發展에 決定的인 특이성이라 할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蘇聯의 現在는 이데올로기적 특색에 의해 支配되는 社會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이용한 強力한 支配體制인데 社會發展이 繼續되어 世界 第2의 工業國으로서 脫工業化로 進行되는 現象이 「테크노크라토」의 대두를 가져왔으며 여기에 이 「테크노크라토」가 때론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취하여 黨료적 支配層과 밀착되기도 하고 때로는 分離되어 대립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黨료적 지배계급(아파라토치키)도 이미 혁명적 지식인의 「그룹」은 아니고 기구의 運營과 조정에 熟達된 사람이다. 오늘

날 蘇聯의 지배계급의 중심을 構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즉 이들 자체가 이미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반위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全人民」에 소속되는 사람이다. 더구나 다음의 지배계급이 되는 「테크노크라토」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당료로부터 「테크노크라토」의 지배로의 전환이 커다란 政治的 위기와 격동을 수반할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蘇聯 社會는 프로레타리아독재로의 회귀는 결코 아닐 것이다. 資本主義世界에서도 工業化에 따라 社會發展이 수반되듯이 社會主義世界에서도 어찌면 社會發展에 따라 必然的인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 「全人民의 國家論」이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은 당료 (아파라토치키)적 支配에서 테크노크라토의 支配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朝鮮이 주창하는 「全人民의 國家」가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기본적으로 완료됨에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데오로기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업화 및 사회발전에 의한 현실변화와 혁명 후 6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프로레타리아적인 혁명에의 정열의 상실과 지배층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1. 조선新憲法(브레즈네프憲法)
2. 조선旧憲法(스탈린憲法)
3. 조선共産党綱令
4. 조선의 政治制度(国会図書館 海外資料局)
5. 조선의 政策變遷過程(国会図書館 海外資料局)
- 6.北韓憲法과 共産諸국의 憲法과의 異同研究
(金哲洙著:国土統一院刊行)
7. 全人民国家の綱領(世界週報 1977.6.28)
8. ソ連はどうなるか?(世界週報, 1977.10.18~11.22 까지 연재)

附

錄

蘇 聯 憲 法 全 文

目 次

(全文)

I. 蘇聯邦의 社会体制 및 政治의 基礎	48
第 1 章 政治制度 (第 1 条~第 9 条)	48
第 2 章 經濟制度 (第 10 条~第 18 条)	50
第 3 章 社会的 發展과 文化 (第 19 条~第 27 条)	53
第 4 章 对外政策 (第 28 条~第 30 条)	55
第 5 章 社会主义祖国의 防衛 (第 31 条~第 32 条)	56
II. 国家와 個人	57
第 6 章 蘇聯邦国籍 市民의 平等權 (第 33 条~第 38 条)	57
第 7 章 蘇聯邦市民의 基本的 權利, 自由 및 義務 (第 39 条~第 69 条)	59
III. 蘇聯邦의 民族的 国家機構	57
第 8 章 聯邦国家로서의 蘇聯邦 (第 70 条~第 75 条)	67
第 9 章 聯邦構成「소비에트」社会主义共和國 (第 76 条~第 81 条)	70
第 10 章 自治「소비에트」社会主义共和國 (第 82 条~第 85 条)	71
第 11 章 自治州 및 自治区 (第 86 条~第 88 条)	72
IV. 人民代議員「소비에트」및 그 選舉節次	74
第 12 章 人民代議員制度와 活動原則 (第 89 条~第 94 条)	74

第 13 章 選挙制度 (第 95 条~第 102 条)	75
第 14 章 人民代議員 (第 103 条~第 107 条)	77
V. 蘇聯邦의 国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79
第 15 章 蘇聯邦最高「소비에트」(第 108 条~第 127 条)	79
第 16 章 蘇聯邦閣僚會議 (第 128 条~第 136 条)	86
VI. 聯邦構成共和国의 国家權力機關과 行政機關構成의 基礎	91
第 17 章 聯邦構成共和国의 国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 137 条~第 142 条)	91
第 18 章 自治共和国의 国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 143 条~第 144 条)	93
第 19 章 国家權力과 行政의 地方機關 (第 145 条~第 150 条)	93
VII. 裁判, 仲裁 및 檢察	96
第 20 章 法院의 仲裁機關 (第 151 条~第 163 条)	96
第 21 章 檢察廳 (第 164 条~第 168 条)	98
VIII. 蘇聯邦의 国章, 国旗, 国歌 및 国都 (第 169 条~第 172 条)	100
IX. 蘇聯邦憲法の 効力과 改正節次 (第 173 条~第 174 条)	111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憲法（基本法）

「우라지밀·이리이치·레닌」이 이끄는 共産党的 指導下에 「러시아」의 勞動者와 農民이 成就한 10月社會主義革命은 資本家와 地主의 權力을 打倒하고 抑圧의 힘을 粉碎하고 「프로레타리아」獨裁를 樹立한 새로운 形態의 國家이며 革命的 獲得物을 擁護하고 社會主義와 共産主義建設의 基本的인 道具인 「소비에트」國家를 創設하였다.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人類의 全世界史的 轉換이 始作되었다.

內戰에서 勝利를 거두고 帝國主義的 干涉을 擊退한 「소비에트」權力은 徹底한 社會的, 經濟的 變革을 實現하여 人間에 依한 人間의 搾取, 階級的 樹立과 民族間敵意를 永遠히 清算하였다. 「소비에트」諸共和國의 蘇聯邦으로의 結合은 社會主義 建設에 있어서의 國家의 諸民族의 힘과 可能性을 增大시켰다. 生産手段의 社會的 所有와 勤勞者大衆을 爲한 真正한 民主主義가 確立되었다. 人類史上 처음으로 社會主義社會가 創設되었다.

大祖國戰爭에서 歷史的 勝利를 거둔 「소비에트」人民軍의 不滅의 攻績은 社會主義의 鮮명한 힘의 現實로 나타났다. 이 勝利는 蘇聯邦의 權威와 國際的 地位를 強化하고 全世界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民族解放, 民主主義 平和努力의 伸張을 위한 새롭고 바람직한 可能性을 展開하였다.

蘇聯邦의 勞動者는 自己의 創造的 活動을 繼續하면서 國家의

迅速하고 全面的인 發展, 社會主義체제의 充實을 保障하였다. 勞動者階級 「콜호즈」農民, 人民「인테리겐차」同盟, 蘇聯邦의 大小諸民族의 友好가 增進되었다. 勞動者階級을 主導的인 힘으로만 「소비에트」社會의 社會的, 政治的 및 思想的 統一이 形成되었다. 「소비에트」國家는 「프로레타리아」獨裁의 任務를 다하고 全人民國家가 되었다. 全人民의 前衛인 共産黨의 指導的 役割이 增大되었다.

蘇聯邦에는 發達된 社會主義社會가 建設되었다. 社會主義가 獨自의 土台위에서 發展하고 있는 이 段階에서는 新체제의 創造的,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의 長點이 漸次로 完全하게 發揮되어 勤勞者는 偉大한 革命的 獲得物의 成果를 漸漸 더 많이 享受하고 있다.

이것은 強力한 生産力, 先進的인 科學과 文化가 創出된 社會, 人民의 福祉가 不斷히 向上되고 個性의 全體的 發展을 위한 漸次 바람직한 條件이 形成되어가고 있는 社會이다.

이는 모든 階級과 社會層의 接近, 모든 大小民族의 法的인 平等 및 實際的 平等, 그 兄弟的 協力을 基礎로 「소비에트」人民이라는 人間의 새로운 歷史的 共同體가 形成된 成熟한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社會이다.

이는 愛國者이며 國際主義者인 勤勞者가 高度의 組織性, 思想性, 意識性을 갖는 社會이다.

이는 萬人이 各人의 福祉에 對하여 配慮하여 各人이 萬人의 福祉에 對하여 配慮하는 것이 生活의 慣習이 되어 있는 社會이다.

이는 社會의 모든 事業의 效果的인 管理, 勤勞者의 漸次 積極的

國家生活에의 參加, 市民의 現實的인 權利 및 自由와 社會에 對한 그들의 義務와 責任의 限界를 保障하는 政治體制를 갖는 真正한 民主主義의 社會이다.

發達한 社會主義社會는 共產主義를 向해 가는 途中의 合法的인 한 段階이다.

「소비에트」國家의 最高의 目標는 社會的, 共產主義的 自治가 發展하는 階級이 없는 共產主義社會의 建設에 있다. 社會主義的 全人民國家의 主된 課題는 共產主義의 物質的 技術的 基盤의 創設, 社會主義的 社會關係로 完成하고 이것을 共產主義的 社會關係로 轉化하는 問題, 共產主義社會의 人間의 育成, 勤勞者의 物質的 文化的 生活水準의 向上, 國家의 安全保障, 平和의 維持와 國際協力의 發展을 促進하는 일이다.

「소비에트」人民은 科學的 共產主義의 思想에 이끌리어 自己의 革命的 傳統으로의 忠誠을 지키며 社會主義의 偉大한 社會的, 經濟的 및 政治的 獲得物에 依拠하며, 社工主義的 民主主義의 加一層의 發展을 目標하며, 社會主義世界體制의 一構成部分으로서의 蘇聯邦의 國際的 立場을 考慮하고 스스로의 國際主義的 責任을 自覺하며, 1918年의 最初의 「소비에트」憲法, 1924年의 蘇聯邦憲法 및 1936年의 蘇聯邦憲法의 思想과 諸原則의 繼續性을 維持하면서 蘇聯邦의 社會體制와 政治的 基礎를 確認하고 市民의 權利, 自由 및 義務, 社會主義的 全人民國家의 組織의 諸原則과 目標를 定하여 이들을 本憲法에서 宣言한다.

I . 蘇聯邦의 社会体制 및 政治의 基礎

第 1 章 政 治 体 制

第 1 条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은 勞働者, 農民, 「인메리겐차」
國家의 모든 大小民族의 勤勞者의 意思와 利益을 代辯하는 社会
主義的 全人民國家이다.

第 2 条 蘇聯邦에 있어서의 全權力은 人民에게 屬한다.
人民은 蘇聯邦의 政治的 基礎를 이루는 人民代議員 「소비에트」
를 通하여 國家權力을 行使한다.
다른 모든 國家機關은 代議員「소비에트」의 監督을 받으며 또
이에 대하여 報告의 義務가 있다.

第 3 条 「소비에트」國家의 組織과 活動은 民主主義的 中央集權制의
原理 即, 下級機關으로부터 上級機關에 이르는 모든 國家機關의
選舉制, 人民에 對한 그들의 報告義務制, 下級機關에 있어서의 上
級機關의 決定에 對한 拘束의 原理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民主
主義的 中央集權制는 統一의 指導와 現地의 創意 및 創造의 積極
性, 委任된 業務에 대하여는 各國家機關 및 公務員의 責任에 依
한다.

第 4 条 「소비에트」國家와 그 모든 機關은 社会主義的 適法性에
依拠하여 活動하며 法秩序, 社會의 利益 및 市民의 權利와 自由
를 保障한다.

國家機關，社會的 組織 및 公務員은 蘇聯邦憲法과 「소비에트」의 諸法律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第 5 條 國家生活의 가장 重要한 諸問題는 全人民의 討議에 回附되 며 또 全人民投票에 붙인다.

第 6 條 蘇聯邦共産党은 「소비에트」社會의 指導的, 先導的인 힘이며 그 政治制度, 國家的 및 社會的 組織의 中核이다. 蘇聯邦共産党은 人民을 爲해서 存在하며 人民을 爲해서 奉仕한다.

「맑스·레닌」主義學說로 武裝된 共産党은 社會發展의 全般的 展望, 蘇聯邦의 内外政策의 路線을 決定하며 「소비에트」人民의 偉 大한 創造的 活動을 指導하고 共産主義의 勝利를 目標로 하는 「소비에트」人民의 鬪爭에 計劃性과 科學的 保障을 해준다.

모든 黨組織은 蘇聯邦憲法의 範疇內에서 行한다.

第 7 條 勞動組織, 全聯邦「레닌」 共産青年同盟協同組合 其他 社會的 組織은 自己의 規約에 依한 課題에 따라서 國家와 社會의 事業 管理, 政治 經濟 社會文化問題의 解決에 參與한다.

第 8 條 勞動者集團은 國家와 社會의 事業討議와 決定, 生活과 社會 的 發展의 計劃立案, 人力의 養成과 配置, 企業과 施設의 管理, 勞動과 生活條件의 改善, 生産發展 및 社會的 文化的 施策과 物 質的 獎勵를 爲한 資金의 使用問題 討議와 解決에 參與한다.

勤勞者集團은 社會主義競爭을 發展시켜 先進的인 作業方法의 普及, 勞動規律의 強化를 促進하고 自己의 構成員을 共産主義的 倫理精 神으로 教育하며 그들의 政治意識, 文化및 職業技能의 向上을 配慮한다.

第9条 「소비에트」社会的 政治制度發展의 基本方向은 社会主義的 民主主義의 加一層의 展開 即, 國家와 社会事業의 管理에 市民을 漸次 広範圍하게 参加시켜 國家機構를 改善하고 社会的 組織의 積極性을 向上시켜 人民監督을 強化하고 國家 및 社会生活의 法的 監督을 公고히 하고 公開制를 擴大시켜 恆常 輿論을 考慮한다.

第2章 經濟制度

第10条 蘇聯邦의 經濟制度의 基礎를 이루는 것은 國家的 所有와 「콜호즈」協同組合的 所有의 形態를 取하는 生産手段의 社会主義的 所有이다.

勞動組合 其他의 社会的 組織의 規約에 依拠한 課題의 實現에 必要한 財産도 社会主義的 所有이다.

國家는 社会主義的 所有를 保護하며 그 增大를 爲한 條件을 創出한다.

如何한 사람도 私腹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타 利己的인 目的을 위해서 社会主義的 所有를 利用할 權利를 갖지 못한다.

第11条 國家的 所有는 全「소비에트」人民의 共有財産이며 社会主義的 所有의 基本的 形態이다.

國家의 排他的 所有에 屬하는 것은 土地, 地下資源, 水域, 森林이다. 工業, 建設 및 農業의 基本的 生産手段, 運輸 및 通信

手段, 銀行, 國家가 組織한 商業企業, 公開企業, 其他企業의 財産, 都市의 主要住宅施設 및 國家課題의 實現에 必要한 其他의 財産은 國家에 屬한다.

第 12 條 「콜호즈」, 其他의 協同組合組織 및 그 合同體의 所有인 것은 生産手段 및 그 規約에 依한 課題의 實現에 必要한 其他의 財産이다.

「콜호즈」가 占有하는 土地는 無償으로 無期限 使用하기 위해서 「콜호즈」에 所屬한다.

國家는 「콜호즈」協同組合의 所有의 發展을 위해서 또 國家的 所有에 推進하기 위해서 努力한다.

「콜호즈」및 其他의 土地利用者는 土地를 效果的으로 使用하며 土地를 重要視하고 그 肥沃度を 높이기 위해서 義務를 진다.

第 13 條 蘇聯邦市民의 個人的 所有의 基礎가 되는 것은 勤勞所得이다. 個人的 所有가 될 수 있는 것은 日用品, 個人的 消費와 便益이 되고있는 物件, 家內 副業, 住宅 및 勤勞貯蓄이다. 市民의 個人的 所有와 이것을 相續하는 權利는 國家가 이를 保護한다.

市民은 副業經營(家畜과 家禽의 飼育을 包含), 園芸와 野菜栽培 및 個人的 住宅建設을 위해서 法律의 定하는 節次에 따라 提供되는 土地區劃을 使用할 수 있다. 市民은 提供된 土地區劃을 合理的으로 利用하는 義務가 있다. 國家와 「콜호즈」는 副業經營에 있어서 市民을 援助한다.

市民이 個人的으로 所有하고 또는 使用하는 財産은 不勞所得을 얻기 위해서 利用하거나 社會의 利益에 損失을 주기 위해서 利用해서는 안된다.

第 14 條 社會의 富, 人民과 「소비에트」의 福祉增大의 源泉은 「소비에트」人들의 搾取로부터 解放된 自由로운 勞動이다.

國家는 『各人은 能力에 따라 勞動하며 勞動에 따라 받는다』고 하는 社會主義의 原則에 따라서 勞動과 消費의 程度를 監督한다.

國家는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의 稅額을 決定한다.

社會적으로 有用한 勞動과 그 結果는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地位를 決定한다. 國家는 物質的 刺戟과 精神的 刺戟을 結合하여 生産革新運動, 일에 對한 創造的 態度를 獎勵하면서 勞動이 各「소비에트」人의 第一의 生活慾求에 轉化하도록 이를 促進시킨다.

第 15 條 社會主義下에서 社會的 生産의 最高目的은 사람들이 漸漸增大하는 物質的, 精神的 慾求를 가장 完全하게 充足시키는 것이다.

國家는 勞動者의 創造的 積極性, 社會主義競爭, 科學技術進步 등의 成果에 依拠하여 經濟指導의 形態와 方法을 改善하면서 勞動生産性의 伸張, 生産의 效率과 일의 質的 向上, 國民經濟의 躍動的 計劃的이고 均衡잡힌 發展을 保障한다.

第 16 條 蘇聯邦經濟는 國家의 領土內에 있는 社會的 生産, 分配, 交換 등 모든 流通을 包含하는 第 1 國民經濟의 複合體이다.

經濟指導는 經濟, 社會發展 國家計劃에 따라 專門別 및 地域別 原則을 考慮하여 中央集權的 管理의 企業, 企業合同, 其他 組織의 經濟的 自主性 및 創意를 結合하면서 實施된다. 이때 經濟計算 制, 利潤, 原價 其他 經濟的인 後援이 積極的으로 利用된다.

第 17 條 蘇聯邦에서는 法律에 따라서 家內工業, 農業, 住民에 對한 生活「서비스」領域에서의 個人的 勞動活動 및 其他 形態의 特히 市民과 그 家族의 個人的 勞動에 立脚한 活動이 許容된다. 國家는 個人的 勞動活動을 調整하며 이것이 社會를 爲해서 利用 되도록 保障한다.

第 18 條 蘇聯邦에서는 現在와 將來의 世代를 爲해서 土地와 地下資源, 水資源, 植物界와 動物界의 保護와 科學的 根柢가 있는 合理的인 利用, 맑은 空氣와 淸淨한 물의 維持, 天然資源의 再生産의 保障, 人間의 環境改善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講究한다.

第 3 章 社會的 發展과 文化

第 19 條 蘇聯邦의 社會的 基礎를 이루는 것은 勞動者, 農民, 「인더리겐차」의 動搖하지 않는 同盟이다.

國家는 社會의 社會的 等質性의 強化 即, 「階級的 差異, 都市와 農村, 精神勞動과 肉體勞動間의 本質的 差異의 消滅, 蘇聯邦의 모든 大小民族의 全面的인 發展과 接近을 促進한다.」

第 20 條 國家는 個人的 自由로운 發展은 萬人의 自由로운 發展의

条件이라고 하는 共產主義의 理念에 따라서 市民이 自己의 創造的 能力과 才質을 發揮하여 個性을 全体的으로 發展시키기 위한 可能性을 擴大하는 것을 自己의 目的으로 한다.

第 21 条 國家는 勞動條件의 改善과 勞動의 保護, 그 科學的 組織에 對하여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의 生産工程의 綜合的 機械化와 自動化에 따라서 過重한 肉體勞動을 減少시켜 이를 完全히 追放하는 問題에 對하여 配慮한다.

第 22 条 蘇聯邦에서는 農業勞動을 工業勞動의 一變種으로 轉化시켜 農村地域에서 國民教育, 文化, 保健, 商業과 公共給食, 生活「서비스」와 公益事業의 施設網을 擴充하고 農村을 整備된 部落으로 改造하는 一貫된 計劃이 實現된다.

第 23 条 國家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따라서 勤勞者의 勞動報酬와 實質所得의 水準을 높이는 方法을 怠慢히 하지 않고 實行한다.

「소비에트」人들의 慾求를 加一層 完全하게 充足시킬 目的으로 社會的 消費基金이 設置된다. 國家는 社會的 組織과 勤勞集團의 廣範圍한 參與下에 이 基金이 增大와 公正한 配分을 保障한다.

第 24 条 蘇聯邦에서는 保健, 社會保障, 商業과 公共給食, 生活「서비스」와 公益事業의 國家的 制度가 機能을 發揮하고 發展한다.

國家는 住民「서비스」에 모든 領域에서의 協同組合, 其他의 社會的 組織의 活動을 獎勵한다. 國家는 大衆的인 體育과 「스포츠」의 發展을 促進한다.

第 25 条 蘇聯邦에서는 市民의 一般教育和 職業訓練을 保障하며 靑

少年의 共產主義的 教育과 精神的 肉体的 發達에 寄與하며 그들
을 勞動과 社會活動에 適合시키도록 하는 單一의 國民教育制度가
存在하며 이를 充實하게 하도록 한다.

第 26 條 國家는 社會의 要請에 따라 科學의 計劃的 發展과 科學
要員의 養成을 保障하며 國民經濟 및 其他의 生活領域으로 科學
研究成果를 導入하고 活用한다.

第 27 條 國家는 精神的 財貨를 保護하고 增大시켜 이것을 「소비
에트」人들의 道德的, 美的 教育等 文化的 水準向上을 위하여 廣
範囿하게 利用하도록 配慮한다. 蘇聯邦에서는 職業藝術과 人民의
藝術的 創造의 發展이 極力 獎勵된다.

第 4 章 對 外 政 策

第 28 條 蘇聯邦은 繼續 「레닌」的 平和政策을 實行하며 諸國民의
安全의 強化와 폭넓은 國際協力을 위해서 努力한다.

蘇聯邦의 對外政策은 蘇聯邦에 있어서의 共產主義의 建設을 위
한 바람직한 國際的 條件의 保障, 蘇聯邦의 國益의 擁護, 世界社
會主義의 立場의 強化, 民族解放과 社會進歩를 爲한 諸國民의 鬪
爭의 支援, 侵略戰爭의 防止, 全面完全軍縮의 達成,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諸國家의 一貫된 平和共存原則의 實行을 目標로 한다.

蘇聯邦에서는 戰爭의 宣傳은 禁止된다.

第 29 條 蘇聯邦과 다른 諸國家와의 關係는 主權의 平等, 武力의

行使 또는 武力에 의한 威脅의 相互拋棄, 國境의 不可侵, 國家의 領土保全, 紛爭의 平和解決, 內政不干渉,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尊重, 諸國民의 平等權과 自決權, 國家間의 協力, 國際法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原則과 基準 및 蘇聯邦이 締結한 國際條約으로부터 發生하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이라는 諸原則을 基礎로 構築된다.

第 30 條 蘇聯邦은 社會主義 世界體制, 社會主義共同體의 一構成部分으로서의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原則에 따라서 社會主義諸國과의 友好와 協力, 同志的 相互援助를 發展強化시켜 經濟統合과 社會主義的 國際分業에 積極적으로 參加한다.

第 5 章 社會主義祖國의 防衛

第 31 條 社會主義祖國의 防衛는 國家의 가장 主要한 機能에 屬하며 全人民의 事業이다.

社會主義的 獲得物, 「소비에트」人民의 平和로운 勞動, 國家의 主權과 領土 保全을 防衛하기 위하여 蘇聯邦軍이 創設되며 一般 兵役義務가 定해진다.

人民에 對한 蘇聯邦軍의 義務는 社會主義集團을 確實하게 防衛하며 如何한 侵略者에 대해서도 即刻적인 反擊을 試圖하는 戰鬪 態勢를 恆常 整備해 두는 것이다.

第 32 條 國家는 나라의 安全과 防衛力을 保障하며 蘇聯邦軍에 必要한 모든 것을 裝備한다.

國家는 安全保障과 勞動力의 強化에 關한 國家機關, 社會的 組織, 公務員 및 市民의 義務는 蘇聯邦의 法律로써 規定한다.

II. 國家와 個人

第 6 章 蘇聯邦國籍 市民의 平等權

第 33 條 蘇聯邦에는 單一의 聯邦國籍이 設定된다. 聯邦構成共和國의 各市民은 蘇聯邦의 市民이다.

「소비에트」國籍의 取得 및 喪失의 根拠와 節次는 蘇聯邦國籍法으로 이를 定한다.

在外蘇聯邦市民은 「소비에트」國家의 保護와 庇護를 받는다.

第 34 條 蘇聯邦市民은 出身, 社會的 地位와 資產狀態, 人種的 및 民族的 所屬, 性, 教育, 言語, 宗教에 對한 態度, 職業의 種類와 性格, 居住地 其他 事情에 關係없이 法앞에 平等하다.

蘇聯邦市民의 平等權은 經濟, 政治, 社會 및 文化生活의 모든 分野에 있어서 保障된다.

第 35 條 蘇聯邦에서는 男·女 모두 平等한 諸權利를 갖는다.

이러한 權利의 實現은 教育和 職業訓練, 勞動, 勞動에 對한 報酬와 戰場에서의 昇進, 社會, 政治活動과 文化活動에 있어서 男性과 平等의 可能性을 女性에게 주고 女性의 勞動과 健康의 保護를 爲한 特別措置에 依해서 女性이 勞動과 母性を 結合할 수 있는 可能한 條件을 만들어 주며, 또 妊婦와 母親에 對하여 有給休暇 其他의 特典을 賦與하여, 幼兒를 가진 女性의 勞動 時間을 短縮하는 것을 包含하여 母와 子의 法的 保護와 物質的 精神的 支援으로써 이를 保障한다.

第 36 條 各人種 및 民族의 蘇聯邦市民은 平等的 諸權利를 갖는다.
이러한 權利의 實現은 蘇聯邦의 모든 大小民族의 全面的 發展과 接近을 企圖하는 政策에 依해서 「소비에트」愛國主義와 社會主義的 國際主義의 精神에 立脚한 市民의 教育에 依해서 母語와 다른 蘇聯邦諸民族의 言語를 使用하는 可能性에 依해서 保障된다.
如何한 것이건 人種的 및 民族의 特徵에 依한 直接的 또는 間接的인 市民의 權利制限이나 直接的 또는 間接的인 特權의 設定은 모든 人種的 또는 民族의 排他性, 敵意 또는 輕蔑의 宣傳과 똑같이 法律에 依하여 罰을 받는다.

第 37 條 蘇聯邦에서는 外國人과 無國籍者에게 그들에게 屬하는 人格的, 財産的, 家族的 權利, 기타의 權利를 保護하기 爲해서 法院 其他의 國家機關에게 提訴할 權利를 包含하여 法律로 規定하는 權利와 自由가 保障된다.

蘇聯邦領土內에 滞在하는 外國人과 無國籍者는 蘇聯邦憲法을 尊重하며 「소비에트」의 諸法律을 遵守해야할 義務가 있다.

第 38 條 蘇聯邦은 勤勞者의 利益이나 平和事業의 擁護, 革命運動이나 民族解放運動의 參加, 進歩的인 社會·政治活動이나 學術活動 또는 其他의 創造的 活動을 理由로 迫害되는 外國人에 대하여 避難權을 提供한다.

第7章 蘇聯邦市民의 基本的 權利 自由 및 義務

第39條 蘇聯邦市民은 蘇聯邦憲法과 「소비에트」諸法律이 宣言하고 保障하는 모든 社会的, 經濟的, 政治的 및 個人的 權利와 自由가 있다. 社會主義體制는 社會, 經濟的 및 文化的 發展의 「프로그램」의 遂行에 따라서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擴大, 生活條件의 不斷한 改善을 保障한다.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行使는 社會와 國家의 利益, 其他 市民의 權利에 損失을 주어서는 안된다.

第40條 蘇聯邦市民은 勞動의 權利 即, 才質, 能力, 職業訓練, 教育에 따라서 社会的 要請을 考慮하여 職業, 業務와 作業의 種類를 選擇할 權利를 包含하여 勞動의 量과 質에 따라 또 國家가 定하는 最低額보다 낮지않은 報酬를 받도록 保障된 일을 얻을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社會主義經濟制度 生産力의 不斷한 增大, 無料의 職業教育, 勞動技能의 向上과 새로운 專門知識의 習得, 職業選擇指導와 就業斡旋의 「시스템」의 發展에 의하여 保障된다.

第41條 蘇聯邦市民은 休息의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勞動者와 職員을 위한 41時間을 超過하지 않는 週勞動의 設定, 一連의 職種과 職場에 있어서 勞動日의 短縮, 夜間作業時間의 短縮, 年次有給休暇와 每週의 休息日의 設定 및 文化教育施設과 保健施設網의 補充, 大衆的인 「스포츠」, 體育, 觀光旅行의 擴大發展, 居住地

에서의 休息을 위한 惠沢可能性과 其他 餘暇의 合理的 利用을 위한 條件의 創設에 依해서 保障된다.

「콜호즈」員의 勞動時間과 休息期間은 「콜호즈」가 調整한다.

第 42 条 蘇聯邦市民은 健康保護의 權利를 갖는다.

이 權利는 國家保健施設이 提供하는 質이 높은 無料의 醫療援助, 市民의 治療와 健康增進을 위한 施設網의 擴充, 保安技術과 産業衛生의 發展과 改善, 広範한 豫防對策의 實施, 環境健全化를 爲한 施策, 學習 및 勞動教育和 無關係한 兒童勞動의 禁止를 包含한 成長하는 世代의 健康에 對한 特別配慮, 疾病의 豫防과 罹患率의 低下, 市民의 長期間의 積極的 生活의 保障을 爲한 科學研究의 展開에 依해서 保障된다.

第 43 条 蘇聯邦市民은 老齡, 疾病으로 因하여 勞動能力을 完全 또는 部分的으로 喪失했을 경우 및 扶養者를 잃었을 때에는 物質的 保障을 받을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勞動者, 職員, 「콜호즈」員의 社會保障, 一時的 勞動能力 喪失時의 扶助金, 國家 및 「콜호즈」의 負擔에 依한 老年年金, 身體障礙者年金, 扶養者喪失年金의 支給, 勞動能力을 部分的으로 喪失한 者의 就職斡旋, 高齡者와 身體障害者에 對한 配慮, 기타 形態의 社會保障에 依해서 保障된다.

第 44 条 蘇聯邦市民은 住宅을 提供받을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國家的 및 社會的 住宅施設의 發展과 保全, 協同組合과 個人에 依한 住宅建設의 助成, 設備가 整備된 住宅의 建設,

「프로그램」의 實現에 따라 提供되는 住宅의 社会的 監督下에서의 公正한 配分 및 低廉한 家賃과 公共「서비스」 料金에 依해서 保障된다. 蘇聯邦市民은 自己에게 提供된 住宅을 所重하게 取扱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 45 条 蘇聯邦市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모든 種類의 教育의 無料制, 靑少年의 普通中等義務 教育의 實現, 學習과 實生活, 學習과 生産의 結合을 基礎로한 職業 技術教育, 中等專門教育및 高等教育의 広範한 發展, 通信教育和 夜間教育의 發展, 學生에게 國家獎學金과 特典의 供與, 學校教科書의 無償支給, 母語에 依한 學校教育의 可能性, 獨學을 위한 條件의 設定에 依해서 保障된다.

第 46 条 蘇聯邦市民은 文化의 達成을 享受할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國家的 및 社会的으로 所藏되어 있는 祖國과 世界文化財의 萬人에 對한 解放, 文化教育施設의 發展과 國內에 있어서의 均等한 配置, 「텔레비전」과 「라디오」, 出版事業과 定期刊行物, 無料 圖書館網의 發展, 諸外國과의 文化交流의 擴大에 依해서 保障된다.

第 47 条 蘇聯邦市民에게는 共產主義建設의 目的에 適合한 科學的, 技術的 및 藝術的 創造의 自由가 保障된다. 이 自由는 科學研究, 發明 및 合理化活動의 広範한 展開, 文學과 藝術의 發展에 依하여 保障된다. 國家는 이를 爲해서 必要한 物質的 條件을 創出하여 民間團體 및 創作同盟을 支援하며 國民經濟 및 其他 生活領域의 發明과 合理化提案의 導入을 誘導한다.

著作權，發明家，合理化提案者의 權利는 國家가 保護한다.

第 48 條 蘇聯邦市民은 國家와 社會의 事業管理，全國的 및 地方的 意義를 갖는 法律 및 諸決定의 討議와 採択에 參加할 權利가 있다.

이 權利는 「소비에트」人民代議員，기타 選舉制에서 國家機關을 選出하며 또 거기에 選出되어 全人民的인 討議와 投票，人民監督，國家機關，社會的 組織 및 社會的 自主活動機關의 活動，勤勞者集團의 集會와 居住地에서의 集會에 參加할 可能性에 의하여 保障된다.

第 49 條 蘇聯邦市民은 國家機關과 社會的 組織에 그들의 活動의 改善에 關한 提案을 하며 活動의 欠陷을 批判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은 所定の 期間內에 市民의 提案과 申請을 檢討하고 이에 回答을 하여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 義務가 있다.

批判을 理由로 하는 迫害는 禁止된다. 批判을 理由로 迫害한 者는 問責을 當한다.

第 50 條 人民의 利益에 適合하며 또 社會主義體制의 強化와 發展을 目的으로 하여 蘇聯邦市民에게는 言論，出版，集會，大衆集會，街頭行進 및 示威運動의 自由가 保障된다.

이러한 政治的 自由의 實現은 勤勞者와 그 組織에의 公共建造物，街路，廣場에의 提供，情報의 広範圍한 普及，出版物，「텔레비전」，「라디오」를 利用하는 可能性에 依해서 保障된다.

第 51 條 蘇聯邦市民은 共產主義建設의 目的에 適合하게 하여 政治的

積極성과 自立活動의 發展, 그들의 多様な 関心の 充足을 促進하는 社会的 組織을 結成할 權利가 있다.

社会組織에는 그 規約에 따른 課題를 無難히 遂行하기 위한 條件이 保障된다.

第 52 条 蘇聯邦市民에게는 良心의 自由, 即 모든 宗教를 信仰하거나 或은 어떠한 宗教를 信仰하지 않거나, 宗教的 儀式을 行事하거나 或은 無神論의 宣傳을 할 수 있는 權利가 保障된다. 宗教의 信仰과 關聯하여 敵意와 憎惡心을 갖는 것은 禁止된다.

蘇聯邦에서는 敎會는 國家로부터, 學校는 敎會로부터 分離된다.

第 53 条 家庭은 國家의 保護下에 든다.

婚姻은 男女의 自發的인 合意에 따라서 成立된다. 夫婦는 家族 關係에 있어서 完全히 平等하다.

國家는 広範圍한 兒童施設網의 設置와 發展, 生活「서비스」와 公共給食의 提供과 充實, 生活手段의 支給, 多子家庭에 對한 手當과 特典의 賦与 및 家庭에 對한 기타 다른 種類의 手當과 援助의 提供方法으로 家庭에 對한 配慮를 한다.

第 54 条 蘇聯邦市民에게는 人身의 不可侵權이 保障된다. 어떠한 사람도 法院의 決定에 依하거나 或은 檢事의 許可가 없으면 逮捕되지 아니한다.

第 55 条 蘇聯邦市民에게는 住居의 不可侵權이 保障된다. 如何한 사람도 合法的인 節次없이 居住者의 意思에 反하여 住居에 侵入할 權利가 없다.

第 56 条 市民의 個人生活, 信書, 電話에 依한 通話, 電報通信의 秘密은 法律로 保護한다.

第 57 条 個人人格의 尊重,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保護는 모든 國家機關, 社会的 組織, 公務員의 義務이다.

蘇聯邦市民은 名譽와 尊嚴, 生命과 健康, 個人의 自由와 財産에 對한 侵害로부터 法院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다.

第 58 条 蘇聯邦市民은 公務員, 國家機關 및 社会的 機關의 行爲에 對하여 訴願의 權利가 있다. 訴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 期間內에 審査하여야 한다.

法律을 違反하여 越權行爲로서 市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公務員의 行爲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 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蘇聯邦市民은 國家的·社会的 組織 및 公務員이 職務遂行中에 犯한 不法行爲로 因한 被害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 59 条 權利와 自由의 行使는 市民의 義務履行과 不可分이다.

蘇聯邦市民은 蘇聯邦憲法과 「소비에트」의 諸法律을 遵守하며 社會主義的 共同生活의 規則을 尊重하고 名譽로운 蘇聯邦市民의 이름을 品位로써 지킬 義務가 있다.

第 60 条 스스로 選択한 社會에 有用한 活動分野에 있어서 良心的 勞動, 勞動規律의 遵守는 勞動能力을 갖는 모든 蘇聯邦市民의 義務이며, 名譽이다. 社会的으로 有用한 勞動의 忌避는 社會主義社會의 諸原則과 一致되지 않는다.

第 61 条 蘇聯邦市民은 社会主義的 所有를 尊重하고 增大시킬 義務가 있다.

國家的·社會的 財産의 竊取 및 浪費와 싸우며 人民의 資産을 所重하게 取扱하는 것은 蘇聯邦市民의 義務이다.

社會的 所有를 侵害하는 者는 法律에 依하여 処罰된다.

第 62 条 蘇聯邦市民은 「소비에트」國家의 利益을 守護하며 그 威力과 權威의 強化를 促進할 義務가 있다.

社会主義祖國의 防衛는 모든 蘇聯邦市民의 神聖한 義務이다.

祖國에 對한 反逆은 人間에 對한 가장 重要한 犯罪이다.

第 63 条 蘇聯邦軍隊의 軍服務는 「소비에트」市民의 名譽로운 義務이다.

第 64 条 다른 市民의 民族的 尊嚴을 尊重하고 「소비에트」多民族 國家의 大小諸民族과 友好를 增進하는 것은 모든 蘇聯邦市民의 義務이다.

第 65 条 蘇聯邦市民은 他人의 權利와 合法的 利益을 尊重하고 反社會的 行爲에 非妥協的 態度를 取하며 社會秩序의 維持를 極力 保全할 義務가 있다.

第 66 条 蘇聯邦市民은 兒童의 教育을 配慮하여 그들을 社會的으로 有用한 勞動에 從事할 수 있도록 對備시켜 社会主義社會의 構成員으로 教育시킬 義務가 있다. 兒童은 兩親을 配慮하여 그들을 扶養할 義務가 있다.

第 67 条 蘇聯邦市民은 自然을 사랑하고 天然資源을 保護할 義務가 있다.

第 68 条 歴史的 記念物 其他 文化財의 保全에 对한 配慮는 蘇聯
邦市民의 責務이다.

第 69 条 他國民과의 友好와 協力の 增進, 全般的 平和의 維持와
強化를 圖謀하는 것은 蘇聯邦市民의 國際主義的 責務이다.

Ⅲ. 蘇聯邦의 民族的 國家機構

第 8 章 聯邦國家로서의 蘇聯邦

第 70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社會主義的 聯邦主義의 原則에 따라 自由로운 民族自決 및 平等의 權利를 갖는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의 自發的 結合의 結果, 形成된 單一의 聯邦制 多民族國家이다.

蘇聯邦은 「소비에트」人民의 國家的 統一을 實現하는 것이며, 共產主義를 共同으로 建設하기 위하여 모든 大小民族을 結束시킨다.

第 71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은 다음의 共和國이 結合한 것이다.

「러시아·소비에트」聯邦社會主義共和國

「우크라이나·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베로루시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우즈베크·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까자흐·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그루지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리뜨아니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몰다비아·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라트비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끼르기즈·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따지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알메니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뚜르크멘·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에스또니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

第 72 条 各聯邦構成共和国에는 蘇聯邦으로부터의 自由로운 脫退의 權利가 留保된다.

第 73 条 国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을 代表하는 「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聯邦의 管轄權限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 (1) 蘇聯邦構成의 새로운 共和国의 加盟, 聯邦構成共和国의 構成內에 있어서 새로운 自治共和国 및 自治州 形成의 承認.
- (2) 蘇聯邦國境의 決定 및 聯邦構成共和国間의 境界變更의 承認
- (3) 共和国과 地方의 国家權力機關의 組織과 活動의 一般原則의 制定
- (4) 蘇聯邦의 全領土에 있어서 立法的 調整의 統一과 保障, 蘇聯邦과 聯邦構成共和国의 立法의 基本原則 制定
- (5) 統一的 社会, 經濟政策의 實施, 国家經濟의 指導, 科学技術進歩의 基本的 方向 및 天然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保護에 關한 一般的 措置의 決定, 蘇聯邦의 經濟, 社会 發展, 国家計劃의 作成과 承認
- (6) 統一的 蘇聯邦国家豫算의 編成과 承認 및 그 執行에 關한

- 報告의承認, 統一的 貨幣, 信用制度의 指導, 蘇聯邦國家豫算에
導入되는 租稅와 收入의 確定, 價格과 勞動報酬分野의 政策決定
- (7) 聯邦의 管轄에 屬하는 國民經濟部門, 企業合同 및 企業의 指
導, 聯邦 곧 共和國의 管轄에 屬하는 部門의 一般的 指導
- (8) 平和와 戰爭의 問題, 主權의 擁護, 蘇聯邦의 國境과 領土의
保全, 防衛組織, 蘇聯邦軍의 指導
- (9) 國家의 安全保障
- (10) 國際關係에 있어서 蘇聯邦을 代表하는 問題, 蘇聯邦과 諸外國
및 國際組織과의 交流, 聯邦構成共和國과 諸外國 및 國際組織과
의 關係의 一般的 節次의 制定 및 이 關係의 調整, 國家独占
에 對한 外國貿易 및 其他 形態의 對外經濟活動
- (11) 蘇聯邦憲法의 遵守에 關한 監督 및 聯邦構成共和國憲法의 蘇
聯邦憲法과의 適合性의 保障問題.
- (12) 全蘇聯的 意義를 갖는 其他 諸問題의 解決.

第 74 條 蘇聯邦의 法律은 모든 聯邦構成共和國의 領土에서 同一한
効力이 있다.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이 全聯邦의 法律과 一致하
지 않을 때에는 蘇聯邦의 法律이 効力이 있다.

第 75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領土는 單一이며 聯邦構成
共和國의 領土를 包含한다.

蘇聯邦의 主權은 全領土에 미친다.

第 9 章 聯邦構成「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第 76 條 聯邦構成共和國는 다른 「소비에트」共和國과 結合하여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을 形成한 主權을 갖는 「소비에트」社會主義國家이다.

聯邦構成共和國는 蘇聯邦憲法 第 73 條에 明示한 範圍밖에서 自己의 領土內的 國家權力을 自主的으로 行使한다.

聯邦構成共和國는 蘇聯邦憲法에 適合하고 共和國의 特殊性을 考慮한 独自の 憲法을 갖는다.

第 77 條 聯邦構成共和國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最高會議),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 蘇聯邦政府 및 其他 蘇聯邦諸機關에 있어서 蘇聯邦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의 解決에 參與한다.

聯邦構成共和國는 自己의 領土內에 있어서 綜合的인 經濟, 社會發展을 保障하고 그 領土內에서 蘇聯邦의 權限의 行使를 도우며 蘇聯邦의 最高國家權力機關과 行政機關의 決定을 實現한다.

聯邦構成共和國는 그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에 關하여 聯邦管轄의 企業施設 및 組織의 活動을 調整하며 監督한다.

第 78 條 聯邦構成共和國의 領土는 그 同意없이는 變更할 수 없다. 聯邦構成共和國間的 境界는 當該共和國間的 相互同意로써 變更되며, 이 同意는 蘇聯邦의 承認을 要한다.

第 79 條 聯邦構成共和國는 그 地方, 州, 管區, 地區의 區分을 決定하며 行政區域에 關한 其他 諸問題를 解決한다.

第 80 条 聯邦構成共和國는 諸外國과 關係를 맺고 條約을 締結하며 外交代表와 領事를 交換하며 國際組織의 活動에 參加할 權限이 있다.

第 81 条 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的 諸權利는 蘇聯邦이 이를 保護한다.

第 10 章 自治「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

第 82 条 自治共和國는 聯邦構成共和國의 構成內에 存在한다.

自治共和國는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權限範圍밖에서 自己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를 自主적으로 解決한다.

自治共和國는 蘇聯邦憲法 및 聯邦構成共和國憲法에 適合하고 自治共和國의 特殊性을 考慮한 独自の 憲法을 갖는다.

第 83 条 自治共和國는 各己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最高의 國家權力機關 및 行政機關을 通하여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의 解決에 參與한다.

自治共和國는 自己의 領土內에서 綜合的인 經濟 및 社會發展을 促進시키며 그 領土內에서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權限의 行使를 돕고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의 決定權을 갖는다.

自治共和國는 그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에 關해서 聯邦管轄 및 共和國(聯邦構成共和國)管轄의 企業, 施設 및 組織의 活動을 調整하며 監督한다.

第 84 条 自治共和国의 領土는 自治共和国의 同意없이는 變更할 수 없다.

第 85 条 「러시아·소비에트」聯邦社会主義共和国에는 「바시게르」, 「브리야뜨」, 「다게스탄」, 「카바르다·바르카르」, 「카르무이끄」, 「카레로」, 「끄미」, 「마리이」, 「모르도바」, 北「오세치아」, 「따따르」, 「투아」, 「우드무르트」, 「체첸·인그시」, 「추아시」, 「야꾸뜨」등 各 自治「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이 있다.

「우주베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카라카르빠끄」自治「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이 있다.

「구르지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아브하지아」, 「아자리아」등 兩個 自治「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나히추완」自治「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이 있다.

第 11 章 自治州 및 自治区

第 86 条 自治州는 聯邦構成共和国 또는 地方에 있다. 自治州에 關한 法律은 自治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提案에 의하여 聯邦構成共和国最高「소비에트」가 制定한다.

第 87 条 「러시아·소비에트」聯邦社会主義共和国에는 「아다게이」, 「꼬르노·아르따이」, 「유다야」, 「카라차에보·체르게소」, 「하야스」등 各 自治州가 있다.

「구르지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南「오세치아」自治州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나고르노·까라바프」自治州가 있다.

「따지끄·소비에트」社会主義共和国에는 「고르노·바다히산」自治州가 있다.

第 88 条 自治区은 地方 또는 州에 있다. 自治区에 関한 法律은 聯邦構成共和国最高「소비에트」가 制定한다.

IV. 人民代議員「소비에트」및 그 選舉節次

第 12 章 人民代議員制度와 活動原制

第 89 条 人民代議員「소비에트」即 蘇聯邦最高「소비에트」(最高會議),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 自治共和國最高「소비에트」, 地方 및 州人民代議員「소비에트」, 自治州 및 自治區人民代議員「소비에트」, 地區·市·都市地區·邑 및 面 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國家權力機關의 統一的 體系를 形成한다.

第 90 条 蘇聯邦「소비에트」,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및 自治共和國最高「소비에트」의 任期는 5 年으로 한다.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任期는 2 年半으로 한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選舉는 적어도 當該「소비에트」의 任期滿了 2 個月前에 公告한다.

第 91 条 當該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가장 重要한 諸問題는 그 會期中에 審議하고 解決한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常任委員會를 構成하며 執行, 處理機關 및 人民代議員「소비에트」에 대하여 報告義務가 있는 其他 諸機關을 設置한다.

第 92 条 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企業, 「콜호즈」, 施設, 組織의 國家的 監督과 勤勞者의 社會的 監督을 結合하는 人民監督機關을 設置한다. 人民監督機關은 國家計劃 및 課題의 遂行을 監督하며

國家規律의 違反, 地方割拠主義나 일에 對한 官廳의 業務範圍, 放
慢經營과 浪費, 業務의 遲延이나 官僚主義와의 鬭爭, 國家機關의
活動의 改善을 促進한다.

第 93 條 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直接 또는 스스로가 設置하는
諸機關을 通하여 國家建設, 經濟建設, 社會·文化建設의 全部門을,
指導하며 決定을 採択하며 그 執行을 保障하고 決定의 執行을
監督한다.

第 94 條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活動은 諸問題의 集團的이며, 自由
由로운 實務的 審議와 決定, 公開性, 「소비에트」 및 住民에 對
한 執行, 處理機關 및 「소비에트」가 設置하는 其他 諸機關의
定期的 報告義務, 「소비에트」의 活動안에 市民의 廣範圍한 參加
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 및 그가 設置하는 諸機關은 自己의 活
動 및 採択한 決定에 對하여 住民에게 系統적으로 報告한다.

第 13 章 選 舉 制 度

第 95 條 모든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選舉는 普通, 平等, 直接選
舉權에 따라서 秘密投票로 實施한다.

第 96 條 代議員選舉는 普通選舉이다. 滿 18 歲에 達한 모든 蘇聯
邦市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따라 精神病者라고 認定되는 者를
除外하고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있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代議員은 滿 21 歲에 達한 蘇聯邦市民中에서 選舉한다.

第 97 條 代議員選舉는 平等選舉이다. 各選舉人은 1 票를 保有하고 모든 選舉人은 平等한 立場에서 選舉에 參加한다.

第 98 條 代議員選舉는 直接選舉이다. 모든 人民代議員「소비에트」代議員은 直接 市民이 選舉한다.

第 99 條 代議員選舉의 投票는 秘密投票이다. 選舉人의 意思表示의 統制는 許容되지 아니한다.

第 100 條 代議員候補者推薦權은 蘇聯邦共産黨, 勞動組合, 全聯邦「레닌」共産青年同盟組織, 協同組合 기타 社会的 組織, 勤勞者集團 및 部隊別 軍服務者의 集會에 屬한다.

蘇聯邦市民 및 社会的 組織에는 代議員候補者의 政治的, 實務的 및 個人的 資源의 自由롭고 全面的인 審議 및 集會, 出版物, 「텔레비전」, 「라디오」로 運動하는 權利가 保障된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 選舉의 實施에 關聯된 經費는 國家가 負擔한다.

第 101 條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代議員選舉는 選舉區別로 實施한다.

蘇聯邦市民은 原則으로 둘 以上の 人民代議員「소비에트」에 選出될 수 없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 選舉의 實施는 社会的 組織, 勤勞者集團 및 部隊別軍服務者集會의 代表로 構成되는 選舉委員會가 保障한다.

人民代議員「소비에트」選舉의 實施節次는 蘇聯邦，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律로 規定한다.

第102條 選舉人은 自己의 代議員에 對하여 要望事項을 提出할 수 있다.

當該 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選舉人의 要望을 檢討하여 經濟社會發展 計劃의 作成 및 豫算의 編成에 있어서 이것을 考慮하고 要望의 履行과 그 實現에 對하여 國民에게 報告한다.

第14章 人民代議員

第103條 代議員은 人民代議員「소비에트」에 있어서 人民의 全權代表이다.

代議員은 「소비에트」의 活動에 參加함으로써 國家建設，經濟建設 및 社會文化建設의 諸問題를 解決의 實行과 國家機關，企業施設 및 組織의 活動을 監督한다.

代議員은 그 活動에 있어서 全國的 利益으로 誘導하며 選舉區民의 要求를 考慮하여 選舉人의 要望의 實現에 努力한다.

第104條 代議員은 生産活動 或은 勤務活動으로심터 離脫하지 않고 自己의 權限을 代行한다.

代議員은 「소비에트」의 會期中이거나 또는 法律이 定한 境遇에는 代議員의 權限을 行使하기 爲해서 常勤場所에서 平均賃金を 支給받으며 生産 或은 勤務上의 義務遂行을 免除받는다.

第105条 代議員은 關係國家機關 및 公務員에게 質問權이 있으며 그 國家機關 및 公務員은 「소비에트」 會期中에 質問에 回答할 義務가 있다. 代議員은 代議員活動의 諸問題에 對한 모든 國家機關 및 社會的 機關, 企業施設組織에 照會하고 스스로 提起한 問題의 檢討에 參加할 權利가 있다. 當該 國家機關 및 社會的 機關, 企業施設組織의 指導者는 遲滯없이 代議員과 面接하여 所定の 期限內에 그 提案을 檢討할 義務가 있다.

第106条 代議員에게 그 權利와 義務를 支障없이 또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한 諸條件이 保障된다.

代議員의 不可侵 및 代議員活動의 기타 保障은 代議員의 地位에 關한 法律 및 蘇聯邦, 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기타 法令으로 定한다.

第107条 代議員은 自己의 活動 및 「소비에트」의 活動에 對하여 選舉人 및 自己를 代議員候補者로 推薦한 集團 및 社會的 組織에 報告할 義務가 있다.

選舉人の 信賴에 報答하지 못한 代議員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選舉人の 多數決에 의하여 언제든지 召還할 수 있다.

V. 蘇聯邦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 15 章 蘇聯邦最高「소비에트」

第 108 條 蘇聯邦國家權力的 最高機關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最高會議)이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本憲法에 依하여 蘇聯邦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모든 問題를 決定할 權限이 있다.

蘇聯邦憲法の 採択, 改正, 新共和國의 蘇聯邦構成으로의 受容, 新自治共和國 및 自治州形成의 承認, 蘇聯邦經濟·社會發展國家計劃, 蘇聯邦國家豫算 및 그 執行에 關한 報告의 承認,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대하여 報告義務가 있는 蘇聯邦諸機關의 組織은 蘇聯邦諸機關의 組織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만이 이를 行할 수 있다.

蘇聯邦의 法律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決定에 따라 實施되는 全人民投票로 採択한다.

第 109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兩院, 即 聯邦「소비에트」(聯邦會議) 및 民族「소비에트」(民族會議)로 構成한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兩院은 平等할 權限을 갖는다.

第 110 條 聯邦「소비에트」와 民族「소비에트」는 同數의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聯邦「소비에트」는 同數의 人口를 갖는 選舉區單位로 選舉한다.

民族「소비에트」는 다음의 基準에 따라서 選舉한다. 各聯邦構成 共和國에서는 代議員 32 名, 各自治共和國에서는 代議員 11 名,

各自治州에서는 代議員 5 名, 各自治區에서는 代議員 1 名으로 한다

聯邦「소비에트」및 民族「소비에트」는 이들이 選出하는 資格審査 委員會의 提案에 따라서 代議員의 資格을 承認하고 또 選舉法違 反이 있는 境遇에는 各代議員選舉의 無効認定의 決定을 採択한다.

第 111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各院은 議長 1 名, 副議長 4 名을 選出한다.

聯邦「소비에트」및 民族「소비에트」의 議長은 各院의 會議을 指 導하며 院內의 秩序를 維持한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合同會議은 聯邦「소비에트」議長과 民族 「소비에트」議長이 相互 主宰한다.

第 112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會議은 年 2 回 召集한다.

臨時會期는 蘇聯邦「소비에트」幹部會가 그 發議에 따라, 또 1 回 의 聯邦構成共和國 或은 어느 院이든 3 分の 1 以上の 代議員의

要求에 依해서 召集한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會期는 兩院의 個別 및 合同會議과 그 會議間에 行해지는 兩院의 常任委員會 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委員會의 會議로 成立한다. 會期는 兩院의 個別 或은 合同會議에서 開會하고 또 閉會한다.

第 113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立法發議權은 聯邦「소비에트」, 民族「소비에트」,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 蘇聯邦閣僚會議, 最高國家權力機關으로 代表되는 聯邦構成共和國,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委員會와 兩院常任委員會, 蘇聯邦最高「소비에트」代議員, 蘇聯邦檢察廳長에게 屬한다.

社會的 組織도 또한 全聯邦的 機關을 通하여 法律을 發議할 權利가 있다.

第 114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提出된 法案 기타의 議案은 兩院에 의하여 個別 或은 合同會議에서 審議된다. 必要한 境遇에 是 法案 또는 當該議案은 豫備的 或은 追加的 檢討를 爲해서 1 個 또는 몇 個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蘇聯邦의 法律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各院에서 院의 代議員 總數의 過半數가 贊成投票했을 境遇에는 採択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決定한 기타 法令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代議員總數의 過半數로 採択한다.

法案 및 國家生活의 가장 重要한 諸問題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에 依해서 或은 1 個의 聯邦構成共和國의 提案에 依해서 採択된 蘇聯邦最高「소비에트」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의 決定에 依해서 全人民討議에 回附할 수 있다.

第115条 聯邦「소비에트」와 民族「소비에트」間에 意見의 不一致가 생겼을 때의 議案은 均等한 原則에 따라서 兩院으로 組織된 調停委員會에 回附되며 그 後 議案은 聯邦「소비에트」와 民族「소비에트」가 合同會議에서 再次 審議한다. 그 境遇에도 一致되지 않으면 議案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다음 會期에 後送되거나 或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全人民投票에 回附한다.

第116条 蘇聯邦의 法律,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決定한 法令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 幹部委員長 및 書記가 署名하여 聯邦構成共和國의 各 國語로 公布한다.

第117条 蘇聯邦最高「소비에트」代議員은 蘇聯邦閣僚會議, 閣僚 및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組織하는 기타의 諸機關의 指導者에게 質問할 權利가 있다.

質問을 받은 蘇聯邦閣僚會議 또는 公務員은 3日以内に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當該會期中에 口頭 또는 文書로 回答할 義務가 있다.

第118条 蘇聯邦最高「소비에트」代議員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同意가 없거나 또 閉會中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의 同意가 없으면 刑事責任을 묻거나 逮捕되거나, 或은 裁判節次에 의한 行政懲戒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第119条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 (全活動에 대하여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報告義務가 있으며, 閉會中에는 憲法이 定하는 範圍內에서 蘇聯邦最

高國家權力機關의 機能을 行使하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常設機關)를 選出한다.

第 120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代議員中에서 選出되며 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長 1名, 第 1 副議長 1名, 副議長 15名 (各 聯邦構成共和國에서 1名씩), 幹部會書記 및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員 21名으로 構成한다.

第 121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다음과 같은 權限을 行使한다.

- (1)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選舉를 公告한다.
- (2)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會議을 召集한다.
- (3) 蘇聯邦最高「소비에트」兩院常任委員會의 活動을 調整한다.
- (4) 蘇聯邦憲法의 遵守與否를 監督하고 聯邦構成共和國의 憲法 및 法律과 蘇聯邦憲法 및 法律과의 適合與否를 檢討한다.
- (5) 蘇聯邦의 法律解釋을 한다.
- (6) 蘇聯邦의 國際條約을 批准하며 또 破棄한다.
- (7) 蘇聯邦關係會議 및 聯邦構成共和國關係會議의 決定 및 命令이 法律에 抵触될 때에는 이를 取消한다.
- (8) 軍人의 稱號, 外交官의 等級 및 기타 特別稱號를 制定한다. 最高의 軍人稱號, 外交官의 等級 및 기타 特別稱號를 授與한다.
- (9) 蘇聯邦의 勳章 및 記章을 制定하면 蘇聯邦의 名譽稱號를 定한다.

蘇聯邦의 勳章 및 記章을 授与하며 蘇聯邦의 名譽称号를 授与한다.

(10) 蘇聯邦의 国籍을 賦与하고, 蘇聯邦 国籍으로부터의 離脱 및 蘇聯邦 国籍의 剝奪, 避難權 供与의 問題를 決定한다.

(11) 特赦에 관한 全聯邦法令을 公布하고 特赦權을 行使한다.

(12) 外國 및 國際組織에 駐在하는 蘇聯邦 外交代表를 任命하며 또 召選한다.

(13) 蘇聯邦에 派遣된 外國 外交代表의 信任狀 및 召選狀을 處理한다.

(14) 蘇聯邦 國防會議을 組織하여 그 構成을 承認하며 蘇聯邦 軍의 最高 統帥部를 任命하고 또 更送한다.

(15) 蘇聯邦의 防衛를 위해서 國內의 個個地地 또는 全國에 戒嚴을 宣布한다.

(16) 總動員 또는 部分的 動員을 布告한다.

(17) 蘇聯邦 最高「소비에트」의 閉會中에 대하여 軍事攻擊이 있을 때 또는 侵略에 대한 相互防衛에 관한 國際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할 必要가 생겼을 경우에는 宣戰을 布告한다.

(18) 蘇聯邦의 憲法 및 法律이 定하는 기타 權限을 行使한다.

第122條 蘇聯邦 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最高「소비에트」의 閉會中에는 다음에 列挙하는 權限을 行使하며, 다음 會期에서 最高「소비에트」의 事後承認을 얻는다.

- (1) 必要한 경우 蘇聯邦의 現行法을 改正하는 일
- (2) 聯邦構成共和國間의 境界變更을 承認하는 일
- (3) 蘇聯邦閣僚會議의 提案에 따라 蘇聯邦의 省 및 蘇聯邦의 國家委員會를 構成하고 또 廢止하는 일
- (4)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의 提案에 따라 蘇聯邦閣僚會議에 各構成員을 解任 또는 任命하는 일

第 123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幹部會令을 公布하고 幹部會決定을 採択한다.

第 124 條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任期滿了後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는 새로 選舉된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새로운 幹部會를 組織할 때까지 그 權限을 行使한다.

새로 選舉된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從來 構成한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를 選舉한 後 2 個月 以內에 召集한다.

第 125 條 聯邦「소비에트」와 民族「소비에트」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問題의 豫備審議와 準備를 위해서 또 蘇聯邦의 法律과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및 그 幹部會의 기타 決定한 事項의 實施를 促進하며 國家機關 및 組織의 活動을 監督하기 위해서 代議員中에서 常任委員會를 選出한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 兩院은 또 均等한 原則에 따라서 合同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必要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特定의 問題에 대하여 調査委員會, 監督委員會 기타 委員會를 設置한다.

모든 國家機關 및 社会的 機關, 組織과 公務員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委員會 및 兩院委員會의 要求를 遂行하며 必要的 資料와 文書를 이 委員會에 提出할 義務가 있다.

委員會의 勸告는 國家機關 및 社会的 機關, 施設 및 組織에 의해서 반드시 檢討되지 않으면 안 된다. 檢討의 結果 또는 講究된 措置에 대해서는 所定の 期限内에 委員會에 報告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第 126 条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대하여 報告義務가 있는 모든 國家機關의 活動을 監督한다.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人民監督機關의 體系를 統率하는 蘇聯邦人民監督委員會를 設置한다.

人民監督機關의 組織과 活動節次는 蘇聯邦人民監督法에 의해서 規定된다.

第 127 条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및 諸機關의 活動節次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規則 및 蘇聯邦憲法에 의해서 公布되는 蘇聯邦의 기타 法律로 定한다.

第 16 章 蘇聯邦關係會議

第 128 条 蘇聯邦關係會議(蘇聯邦政府)는 蘇聯邦의 國家權力の 最高 執行, 處理機關이다.

第 129 条 蘇聯邦關係會議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의해서 聯邦

「소비에트」와 民族「소비에트」의 合同會議에서 蘇聯邦閣僚會議議長, 蘇聯邦閣僚會議第1副議長(複數) 및 副議長(複數), 蘇聯邦閣僚, 蘇聯邦國家委員會議長으로 構成한다.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議長은 職務上 蘇聯邦閣僚會議의 構成員이 된다. 蘇聯邦閣僚會議議長의 推薦에 따라 蘇聯邦最高「소비에트」는 蘇聯邦의 기타 諸機關과 組織의 責任者를 蘇聯邦政府의 構成員으로 할 수 있다.

蘇聯邦閣僚會議는 새로 選出된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대하여 第1會期에서 自己의 權限을 返還한다.

第130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 報告의 義務가 있다. 또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閉會中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또 報告의 義務가 있다.

蘇聯邦閣僚會議는 自己의 活動에 대하여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定期的으로 報告한다.

第131條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國家行政의 모든 問題를 決定하는 權限을 갖는다. 단 그들이 憲法에 의해서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및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議 權限에 屬하지 않은 경우에 限한다.

蘇聯邦閣僚會議는 自己의 權限範圍內에서 다음 事項을 行使한다.
(1) 國民經濟 및 社會, 文化建設의 指導를 保障한다. 人民의 福祉와 文化向上의 保障, 科學과 技術의 發展, 天然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保護, 通貨信用制度의 改化, 價格, 勞動報酬, 社會保障의 統一的 政策의 實施, 國家保險 및 統一的 計算, 統計制度의 組織을 위한 措置를 講究하고 實施한다. 工業, 建設, 農業企業 및 企業合同, 運輸, 通信企業, 銀行 및 기타의 聯邦管轄의 組織과 施設의 管理를 한다.

- (2) 蘇聯邦의 經濟, 社會發展의 短期 및 長期國家計劃, 蘇聯邦國家豫算을 編成하고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提出한다. 國家計劃 및 豫算의 執行을 위한 措置를 講究한다. 計劃의 遂行과 豫算의 執行에 관한 報告를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報告한다.
- (3) 國家利益의 擁護, 社會主義的 所有와 社會秩序의 維持, 市民의 權利와 自由의 保障과 擁護를 위한 措置를 取한다.
- (4)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措置를 講究한다.
- (5) 蘇聯邦軍의 建設의 一般的 指導를 하고 現役의 軍務에 召集되어야 할 市民의 每年度 人員을 決定한다.
- (6) 諸外國과의 關係, 對外貿易, 蘇聯邦과 諸外國의 經濟, 科學技術文化協力의 分野에 있어서 一般的 指導를 한다. 蘇聯邦의 國際條約의 履行을 保障하는 措置를 講究한다. 政府間 國際條約을 承認하며 또 破棄한다.
- (7) 必要한 境遇에는 經濟建設, 社會, 文化, 및 國防建設의 諸問題를 担当하는 委員會, 中央管理局 및 기타 官廳을 蘇聯邦關係會議의 下部에 設置한다.

第132条 国民經濟의 指導의 保障과 關聯된 諸問題 및 國家行政의 기타 諸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 蘇聯邦閣僚會議의 常任機關으로서 蘇聯邦閣僚會議議長 第1副議長 및 副議長을 그 構成員으로 하는 蘇聯邦閣僚會議幹部會가 活動한다.

第133条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의 法律 및 蘇聯邦最高「소비에트」와 그 幹部會의 다른 決定에 따른 또 이를 執行하기 爲해서 命令을 發하며 그 執行을 点檢한다. 蘇聯邦閣僚會議의 決定 및 命令은 蘇聯邦의 全域에서 執行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第134条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諸問題에 關하여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의 決定 및 命令의 執行을 停止하고 또 蘇聯邦의 各省, 蘇聯邦의 國家委員會 기타 所屬諸機關의 法令을 取消할 權利가 있다.

第135条 蘇聯邦閣僚會議는 蘇聯邦의 全聯邦省 및 聯邦共和國省, 國家委員會 기타 所屬諸機關의 活動을 統一하고 方向을 設定 指導한다.

蘇聯邦의 全聯邦省 및 國家委員會는 蘇聯邦全域에 걸쳐서 直接或는 設置하는 機關을 通하여 그 委任된 管轄下에 있는 行政部門을 指導하며 또는 數個部門에 걸쳐 管理를 한다.

蘇聯邦의 聯邦·共和國省과 國家委員會는 原則으로 聯邦構成共和國의 當該省, 國家委員會 기타 諸機關을 通하여 委任된 行政部門을 指導하며 또는 數個部門에 걸치는 管理를 하며 聯邦管轄의 各企業 및 企業合同을 直接 管理한다. 共和國 및 地方的 管轄

에서 聯邦管轄로의 企業 및 企業合同의 移管의 節次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회가 定한다.

蘇聯邦의 省 및 國家委員會는 委任된 管理領域의 狀態와 發展에 대하여 責任을 지며 自己權限의 範圍內에서 蘇聯邦의 法律, 蘇聯邦最高「소비에트」 및 幹部회의 다른 決定, 蘇聯邦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에 의거하여 또 이를 執行하기 위해서 省令을 公布하고 執行을 하며 點檢한다.

第136條 蘇聯邦閣僚會議 및 幹部회의 權限, 이들 活動의 節次, 閣僚會議와 기타 國家機關과의 關係 및 蘇聯邦의 全聯邦省과 聯邦·共和國省 및 國家委員會의 名簿는 憲法에 의해서 蘇聯邦閣僚會議法으로 定한다.

VI.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機關과 行政機關構成的의 基礎

第 17 章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 137 條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的 最高機關은 聯邦構成共和國
最高「소비에트」이다.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는 蘇聯邦憲法 및 聯邦構成共和國
憲法에 의하여 聯邦構成共和國의 管轄權限에 屬하는 모든 問題를
決定하는 權限을 갖는다. 聯邦構成共和國憲法の 採択, 改正, 聯邦
構成共和國의 經濟, 社會發展, 國家計劃, 國家豫算 및 그 執行에
關한 報告의 承認,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에 對하여 報告
義務가 있는 諸機關의 組織은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만이
할 수 있다.

聯邦構成共和國의 法律은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 또는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의 決定에 따라 實施하는 人民投票
에 의해서 採択된다.

第 138 條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는 最高「소비에트」幹部會(그
全活動에 對하여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에 報告義務가
있는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의 常設機關)를 選出한다.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幹部會의 構成과 權限은 聯邦構成共
和國憲法으로 定한다.

第 139 条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는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家權力의 最高執行處理機關인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聯邦構成共和國政府)를 組織한다.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報告의 義務가 있다. 또 最高「소비에트」의 閉會中에는 聯邦構成共和國最高「소비에트」幹部會에 責任을 지며 報告義務가 있다.

第 140 条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令, 蘇聯邦閣僚會議의 決定과 命令에 따라 이를 執行하기 위해서 命令을 發하고 執行을 하며 또 點檢한다.

第 141 条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自治共和國閣僚會議의 決定 및 命令의 執行을 停止하며 地方, 州, 市(共和國管轄市)의 人民代議員「소비에트」, 自治州의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執行委員會, 州區分을 갖지 않은 聯邦構成共和國에서는 地區 및 當該市의 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執行委員會의 決定 및 命令을 取消할 權利가 있다.

第 142 条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는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共和國省 및 共和國省, 國家委員會, 기타 管下諸機關의 活動을 統合하고 方向을 設定한다.

聯邦構成共和國의 聯邦·共和國省 및 國家委員會는 聯邦構成共和國閣僚會議 및 蘇聯邦의 當該聯邦共和國省 또는 蘇聯邦國家委員會에 從屬하면서 委任된 管理部門을 指導하며 또 數個部門에 걸쳐

管理를 한다.

共和国省 및 国家委員會는 聯邦構成共和国閣僚會議에 從屬하면서 委任된 管理部門을 指導하며 또 數個部門에 걸쳐 管理를 한다.

第 18 章 自治共和国의 国家權力과 行政의 最高機關

第 143 条 自治共和国의 国家權力的 最高機關은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이다.

自治共和国憲法の 採択, 改正, 自治共和国의 經濟, 社会發展国家計劃 및 国家豫算의 承認,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에 對하여 報告義務가 있는 諸機關의 組織은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만이 할 수 있다.

自治共和国의 法律은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가 採択한다.

第 144 条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는 自治共和国最高「소비에트」幹部會를 選出하며 自治共和国閣僚會議(自治共和国政府)를 組織한다.

第 19 章 国家權力과 行政의 地方機關

第 145 条 地方, 州, 自治州, 自治区, 地区, 市, 市内区, 邑, 農村居住地의 国家權力機關은 當該人民代議員「소비에트」이다.

第 146 条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全国家的 利益 및 當該「소비에트」의 領域에 居住하는 市民의 利益에 立脚하여 地方的 意義를 갖는 모든 問題를 決定하고 上級国家機關의 決定을 実行

하며 下部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活動을 指導하며 共和國的, 全聯邦的 意義를 갖는 諸問題의 審議에 參加하며 이들에 關하여 自己의 提案을 한다.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自己의 領域內에서 國家建設, 經濟建設 및 社會, 文化建設을 指導하며 經濟, 社會發展計劃 및 地方豫算을 承認하며 自己에게 從屬하는 國家機關, 企業, 施設 및 組織의 指導를 하고 法律의 遵守, 國家的·社會的 秩序, 市民의 權利保全을 保障하며 國家의 防衛力의 強化를 圖謀한다.

第 147 條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自己의 權限의 範圍內에서 그 領域內의 綜合的인 經濟 및 社會發展을 保障하며 그 領域內에 配置된 上級機關에 所屬하는 企業, 施設 및 組織에 對하여 法律의 遵守를 監督하며 土地利用, 自然保護, 建設, 勞動資源의 利用, 消費財生産, 住民에 對한 社會, 文化「서비스」, 生活「서비스」, 其他의 「서비스」分野의 活動을 調整 監督한다.

第 148 條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는 蘇聯邦·聯邦構成共和國 및 自治共和國의 法律에 의해서 自己에게 賦與된 權限의 範圍內에서 決定을 한다. 地方「소비에트」의 決定은 當該 「소비에트」領域內에 配置된 모든 企業, 施設, 組織 및 公務員과 市民에 의해서 반드시 執行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 149 條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執行處理機關은 「소비에트」가 代議員中에서 選出되는 執行委員會이다.

執行委員會는 그것을 選出한 「소비에트」에 對하여 또 勤勞者

集團의 集會와 市民의 居住地에서의 集會에 있어서 年1回以上
報告를 한다.

第150條 地方人民代議員「소비에트」의 執行委員會는 그를 選出한
「소비에트」 및 上級の 執行處理機關에 對하여 直接報告義務가
있다.

VII. 裁判, 仲裁 및 檢察

第 20 章 法院과 仲裁機關

第 151 条 蘇聯邦에 있어서 裁判은 法院에서만 한다.

蘇聯邦에서는 蘇聯邦最高法院, 聯邦構成共和國最高法院, 自治共和國最高法院, 地方·州 및 市法院, 自治法院, 自治區法院, 地區(市) 人民法院 및 軍의 軍法會議가 活動한다.

第 152 条 蘇聯邦에 있어서 모든 法院은 法官 및 人民陪席判事の 選舉制原則에 따라서 構成한다.

地區(市) 人民法院의 人民法官은 5 年の 任期로 普通, 平等, 直接選舉權에 따라 秘密投票로 地區(市)의 市民이 選舉한다. 地區(市) 人民法院의 人民陪席判事は 2 年半의 任期로 市民의 戰場 또는 居住地의 集會에서 公開投票로 選舉한다.

上級法院은 5 年の 任期로 當該 人民代議員「소비에트」가 選舉한다.

軍法會議의 法官은 5 年の 任期로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가 選舉하며 人民陪席判事は 2 年半의 任期로 軍服務者의 集會에서 選舉한다.

法官 및 人民陪席判事は 選舉人 또는 그들을 選舉한 機關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그들에게 報告를 하며 그들에 의해서 法律이 定하는 節次에 따라 召選될 수 있다.

第 153 条 蘇聯邦最高法院은 蘇聯邦의 最高裁判機關이며 蘇聯邦의 諸法院 및 法律의 定하는 範圍內에서 聯邦構成共和國法院의 裁判活動의 監督을 한다.

蘇聯邦最高法院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의해서 長官, 次官, 判事 및 人民陪席判事を 構成員으로 하여 選舉한다. 聯邦構成共和國最高法院長은 그 職務上 蘇聯邦最高法院의 構成員이 된다.

蘇聯邦最高法院의 組織과 活動節次는 蘇聯邦最高法院法으로 定한다.

第 154 条 모든 法院에 있어서 民事 및 刑事事件의 裁判은 合議로서 하며 第 1 審法院에서는 人民陪席判事が 이에 參加한다. 人民陪席判事は 裁判을 함에 있어서 法官이 지니는 모든 權利를 갖는다.

第 155 条 法官 및 人民陪席判事は 獨立이며 法律에만 의한다.

第 156 条 蘇聯邦에 있어서 裁判은 法과 法廷앞에서 市民의 平等의 原則에 立脚해서 行한다.

第 157 条 모든 法院에 있어서 事件의 審理는 公開로 한다. 非公開法廷에서의 事件審理는 法律이 定한 境遇에만 許容되며 訴訟節次의 모든 規則을 遵守하여 이를 行한다.

第 158 条 被告人에게는 弁護의 權利가 保障된다.

第 159 条 訴訟節次는 聯邦構成共和國 또는 自治共和國, 自治州, 自治區의 言語, 或은 當該 地域의 住民의 大多數言語로 行한다. 訴訟節次에서 使用되는 言語를 解說못하는 參加者에게는 事件資料에

充分히 精通할 權利, 通譯官을 통한 裁判活動으로의 參加 및 法
廷에서 母語로 陳述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 160 条 누구도 法院의 判決이나 또는 法律에 依拠하는 以外에는
有罪로 認定되거나 刑罰을 받지 아니한다.

第 161 条 市民이나 諸組織에 法律上的 援助를 提供하기 위하여 弁
護士團이 活動한다. 法律로 定한 境遇에는 市民에 對한 法律上
의 援助는 無料로 한다.

弁護士團의 組織과 活動節次는 蘇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의 法
律로 定한다.

第 162 条 民事 및 刑事事件의 訴訟節次는 社會的 組織과 勤勞者集
團의 代表의 參加가 認定된다.

第 163 条 企業, 施設 및 組織間의 經濟的 紛爭의 解決은 國家仲裁
機關이 그 權限의 範圍內에서 이를 行한다.

國家仲裁機關의 組織과 活動節次는 蘇聯邦國家仲裁法에 의해서
이를 定한다.

第 21 章 檢 察 庁

第 164 条 모든省, 國家委員會 및 部局, 企業, 施設 및 組織, 地方
人民代議員 「소비에트」의 執行 處理機關, 「콜호즈」, 協同組合,
其他의 社會的 組織, 公務員 및 市民들의 正確하고 一貫된 法律
執行에 對한 最高의 監督은 蘇聯邦檢察總長 및 이에 所屬한 檢
事の 任務로 한다.

第 165 条 蘇聯邦檢察總長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가 任命하며 蘇聯邦最高「소비에트」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報告의 義務가 있다. 또 最高「소비에트」의 閉會中에는 蘇聯邦最高「소비에트」幹部會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報告의 義務가 있다.

第 166 条 聯邦構成共和國, 自治共和國, 地方, 州, 自治州의 檢事는 蘇聯邦檢察總長이 任命한다. 自治區의 檢事 및 市의 檢事는 聯邦構成共和國의 檢事가 任命한다. 自治區의 檢事 및 市의 檢事는 聯邦構成共和國의 檢事가 任命하여 蘇聯邦檢察總長이 承認한다.

第 167 条 蘇聯邦檢察總長 및 모든 下級檢事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第 168 条 檢察機關은 蘇聯邦檢察總長에게만 所屬하며 어떠한 地方機關으로부터도 獨立하여 그 權限을 行使한다.

檢察機關의 組織과 活動節次는 蘇聯邦檢察法에 의하여 이를 定한다.

VIII. 蘇聯邦의 國章, 國旗, 國歌 및 國都

第 169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國章은 太陽光線과 보리 이삭에 둘러 쌓인 地球위에 낫과 「해머」를 그리고 聯邦構成共和國의 各國語로 「萬國의 「프로레타리아」는 團結하라!」고 表示한 것이다. 國章의 上部에는 卍족한 5個의 별이 있다.

第 170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國旗는 旗棒에 가까운 위쪽 구석에 金色의 낫과 「해머」를 그리고 그 위에 金色으로 描畵한 卍족한 5個의 별을 그린 붉은 長方形의 旗이다. 國旗의 縱橫의 比는 1對 2이다.

第 171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國歌는 蘇聯邦最高 「소비에트」幹部會에 의해서 承認된다.

第 172 條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國都는 「모스크바」市이다.

IX. 蘇聯邦憲法の 効力과 改正節次

第 173 条 蘇聯邦憲法은 最高의 法的 効力이 있다. 國家機關의 모든 法律과 기타 法令은 蘇聯邦憲法에 의해서 公布된다.

第 174 条 蘇聯邦憲法の 改正은 蘇聯邦最高「소비에트」兩院의 總代議員數의 3 分の 2 以上の 多數로 採択된 蘇聯邦最高「소비에트」의 決定에 의해서 行한다.

< 訳者 : 蘇聯課 蘇聯政治資料担当官 李觀洙 >

中 共 憲 法 全 文

目 次

序 言	105
第 1 章 總綱	107
第 2 章 國家機構	113
第 1 節 全國人民代表大會	113
第 2 節 國務院	116
第 3 節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及 地方 各級 革命委員會	117
第 4 節 民族自治地方及 自治機關	120
第 5 節 人民法院及 人民檢察院	121
第 3 章 公民的 基本權利及 義務	123
第 4 章 國旗，國章，首都	126

序 言

中国人民은 百余年 동안의 英雄的인 투쟁을 거쳐 마침내 偉대한 領袖이며 導師인 毛沢東主席을 비롯한 中國共産党的 領導하에 人民 革命戰爭에 의해 帝國主義·封建主義 및 官僚資本主義의 反動政治를 뒤엎고 新民主主義革命의 철저한 勝利를 達成하셨으면 1949 年에 中和人民共和國를 樹立하였다.

中和人民共和國의 成立은 우리나라 社會主義의 歷史的 段階가 開始되었음을 나타낸다. 建國 이후 毛主席과 中國共産党的 領導하에 우리나라 各 民族 人民은 政治·經濟·文化·軍事·外交의 各 戰線에서 毛主席의 프롤레타리아革命路線을 貫徹·執行하고 國內外 敵들에 反對하는 거듭되는 투쟁과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을 거쳐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偉대한 勝利를 거두었다.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獨裁는 鞏固·強化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初步的으로 繁榮·昌盛한 社會主義國家가 되었다.

毛沢東 主席은 中華人民共和國의 創建者이다. 우리나라 革命과 建設의 모든 勝利는 모두 마르크스主義·레닌主義·毛沢東思想의 指導하에 達成된 것이다. 毛主席의 偉대한 旗幟를 영원히 높이 들며 堅決히 수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各 民族 人民이 단결하여 싸우며 프롤레타리아革命 事業을 끝까지 진행시키는 근본적인 保證이 된다.

第1次 프롤레타리아文化革命이 승리로 結束되고 이로써 우리나라의 社会主義革命과 社会主義建設은 새로운 發展의 時期에 들어섰다. 全 社会主義 歷史 段階에 있어서의 中国共産党的 基本路線에 의거한 이 새로운 時期에 있어서의 全国 人民의 總任務는 프롤레타리아獨裁하에서의 繼統革命을 堅持하고, 階級鬭爭·生産鬭爭·科学實驗의 三大革命運動을 展開함으로써 今世期 내에 우리나라를 農業·工業·國防 및 科学技術에 있어서 現代化된 偉大한 社会主義 強國으로 建設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鬭爭을 堅持하고 資本主義 方式에 대한 社会主義 方式의 鬭爭을 堅持하며 修正主義를 反對하고 資本主義의 부활을 防止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社会帝國主義와 帝國主義 顛覆과 侵略에 대처할 準備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勞動者階級이 領導하는 工農聯盟을 基礎로 하는 광범위한 知識分子와 기타 勤勞大衆을 團結하여 愛國的 民主党派·愛國人士·臺灣同胞·홍콩·마카오同胞와 海外僑胞들을 團結하는 統一革命戰線을 鞏固·發展시켜야 한다. 全国 各 民族들의 大團結을 強化하여야 한다. 敵我的 矛盾과 人民 内部的 矛盾을 正確하게 區別하고 處理하여야 한다. 全国 人民들 가운데에서 集中도 있고 民主도 있으며 紀律도 있고 自由도 있으며 統一意志도 있고 個人的 心情도 유쾌하며 生動活潑한 그러한 政治的 局面을 造成하기에 힘씀으로써 모든 積極的인 要素를 동원하여 모든 困難을 克服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를 더욱 鞏固히 하고 우리나라의 建設을 가속화하는데 이룸

게 하여야 한다.

臺灣은 中国의 神聖한 領土이다. 우리는 반드시 臺灣을 解放하여 統一祖国의 大業을 完成하여야 한다.

國際關係에 있어서 우리는 主權과 領土保全의 相互尊重·相互不可侵·相互 内政不干涉·平等互惠 및 平和共存五原則의 基礎위에서 여러 나라들과의 關係를 수립하고 發展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永遠히 霸權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永遠히 超大国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를 堅持하고 '三世界論'에 따라 全世界 프롤레타리아, 被压迫人民 및 被压迫民族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社会主義 國家들과의 團結을 강화하고 第三世界 國家들과의 團結을 강화하며 社会帝國主義와 帝國主義 超大國의 侵略·顛覆·干涉·統制·멸시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聯合하여 가장 광범위한 國際統一戰線을 結成함으로써 超大國들의 霸權主義에 反對하고 새로운 世界戰爭을 反對하며 人類의 進歩와 解放事業을 위해 奮闘하여야 한다.

第1章 總 則

第1条 中華人民共和國은 勞動者階級이 領導하는 工農聯盟을 基礎로 하는 無產階級獨裁의 社会主義國家이다.

第2条 中國共產黨은 全 中國人民의 領導的 核心이다. 勞動者階級은 自己의 先鋒隊인 中國共產黨을 통하여 國家에 對한 領導를

實現한다. 中華人民共和國의 指導思想은 맑스주의·레닌주의·毛澤東思想이다.

第3條 中華人民共和國의 모든 權力은 人民에게 속한다. 人民이 國家權力을 行使하는 機關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이다.

全國人民代表大會·地方·各級 人民代表大會 및 기타 國家機關은 一律적으로 民主集中制를 實行한다.

第4條 中華人民共和國는 統一된 多民族國家이다. 各 民族은 一律적으로 平等하다. 各 民族間에는 서로 團結하고 友愛있고, 서로 돕고 서로 배워야 한다. 그 어떤 民族에 대한 차별이나 壓迫도 금지하며 各 民族들 간의 團結을 破壞하는 行爲를 금지하며 大民族主義와 地方民族主義를 反對한다.

各 民族은 모두 自己의 言語와 文字를 使用하며 發展시킬 自由를 갖으며 自己의 風俗·習慣을 改革할 自由를 갖는다.

各 少數民族이 살고 있는 地方들은 區域自治를 實施한다. 各 民族自治地方은 모두 中華人民共和國의 分離할 수 없는 部分이다.

第5條 中華人民共和國의 生産手段 所有制는 現 段階에 있어서 主要한 두가지가 있다. 즉 社會主義 全民 所有制와 社會主義 勞動大衆集體所有制이다.

國家는 農業에 종사하지 않는 勞動者가 城·鎮, 또는 農村 基層組織의 統一的인 安排와 管理하에 法律이 허용하는 範圍 내에서, 남을 착취하지 않는 個人勞動에 從事하는 것을 許可한다. 同

時에 그들을 점차 社會主義集체化의 길로 나아가도록 引導한다.

第6条 國營經濟, 즉 社會主義 全 人民所有制經濟는 國民經濟에 있어서 領導的인 力量이다.

鎂物資源·水資源·國有 森林·荒蕪地 및 기타 海陸資源은 모두 全 人民所有에 屬한다.

國家는 法律에 規定된 條件에 의해 土地를 收用하거나 徵用 또는 國有로 回收할 수 있다.

第7条 農村人民公社經濟는 社會主義勞動大衆 集체所有制經濟이며, 현재 一般적으로 公社·生産大衆·生産隊의 三級所有를 實行하며, 生産隊를 基本核算單位로 한다. 生産大隊는 條件이 成熟되었을 때, 大隊를 基本核算單位로 移行할 수 있다.

人民公社集체經濟가 絶對的인 優勢를 占한다는 條件하에서, 人民公社社員들은 少量의 自留地와 家庭副業을 經營할 수 있으며, 收畜地區에서도 약간의 私有家畜을 갖을 수 있다.

第8条 社會主義的 公共財産은 不可侵이다. 國家는 社會主義 全 人民所有制經濟 및 社會主義 勞動大衆 集체所有制經濟의 鞏固·發展을 保障한다.

國家는 누구든지 어떤 手段을 利用해서든지, 社會經濟秩序를 攪亂하며 國家經濟計劃을 破壞하고 國家와 集團의 財産을 침해하거나 浪費하며 公共利益에 危害를 加하는 것을 禁止한다.

第9条 國家는 公民의 合法的인 收入·貯蓄·家屋 및 기타 生活手段의 所有權을 保護한다.

第10条 國家는 “일하지 않는 者는 먹지 말라 (不勞動者 不得食)”

“各者는 能力을 다하고, 勞動에 따라 分配한다. (各盡所能·按勞分配)”는 社會主義原則을 實行한다.

勞動은 勞動能力을 가지고 있는 모든 公民의 영광된 職責이다. 國家는 社會主義 勞動 競争을 提唱하고 無產階級政治 優先의 前提하에 精神的 격려와 物質的 奨勵를 서로 結合시켜 精神的 激勵을 위주로 하는 方針을 實行하여 公民들로 하여금 勞動을 하는데 있어서의 社會主義的 積極性和 創造性을 격려한다.

第11条 國家는 노력을 다하며 앞장서기에 힘쓰며, 많이 빨리, 좋게, 節約하면서 社會主義를 건설하는 總路線을 견지하고, 計劃적으로 比例에 따라 高速度로 國民經濟를 발전시키며 社會生産力을 不斷히 提高시킴으로써 國家의 獨立과 安全을 鞏固히 하며 人民의 物質生活과 文化生活을 점차 改善한다.

國家는 國民經濟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獨立自主·自力更生·苦奮闘·勤儉建國의 方針과 農業을 基礎로 하고 工業을 主導로 하는 方針, 그리고 中央의 統一的 領導 밑에 中央과 地方의 두 積極性을 충분히 發揮시키는 方針을 견지한다.

國家는 環境과 自然資源을 保護하며, 汚染과 其他 公害를 防止한다.

第12条 國家는 科學事業을 힘써 발전시키고 科學研究를 강화하며 技術革新과 技術革命을 전개하고 國民經濟의 모든 部門에서 될수록 先進技術을 採用한다. 科學技術事業은 반드시 專門家들과

광범한 群衆을 서로 결합시키며 學習과 獨創性을 서로 結合시켜야 한다.

第 13 条 國家는 教育事業을 힘써 발전시키고 全國 人民의 文化·科學水準을 높인다. 教育은 반드시 無階級政治를 위하여 奉仕하고 生産勞動과 서로 결합해야 하며 教育을 받는 者들로 하여금 德育·智育·體育 등 각 方面에 있어서 모두 발전하게 함으로써 社會主義的인 覺悟와 文化知識이 있는 勞動者로 되게 하여야 한다.

第 14 条 國家는 모든 思想·文化 領域에서의 馬斯主義·레닌主義·毛澤東 思想의 領導的 地位를 견지한다. 모든 文化事業은 工農兵을 위해 奉仕하고 社會主義를 위해 奉仕하여야 한다.

國家는 “百花齊放·百家爭鳴”의 방침을 실시함으로서, 藝術의 발전과 科學의 進步를 촉진하며, 社會主義文化의 繁榮을 촉진한다.

第 15 条 國家機關은 항상 人民 大衆과의 친밀한 聯繫關係를 갖고 人民 大衆에 의거하며 群衆의 意見을 경청하고 群衆의 病苦에 관심을 기울이고 精兵 및 行政의 간소화를 꾀하며 節約에 힘쓰고 效能을 높이며 官僚主義를 반대하여야 한다.

國家機關의 各級 領導 일꾼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無階級革命事業 계승자의 條件에 따라, 老年·中年·青年의 三結合原則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 16 条 國家機關의 工作人員들은 반드시 馬斯主義·레닌主義·毛澤東思想을 진지하게 學習하며 誠心성의껏 人民을 위하여 奉仕하며

業務의 研鑽에 힘쓰고 集体生産勞動에 적극참가하며 群衆의 감독을 받고 憲法과 法律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國家의 政策을 정확히 집행하고 實事求是하여야 하며 허위날조를 하여서는 안됨은 물론 職權을 利用하여 私利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第17條 國家는 社會主義的 民主原則을 견지하며 人民이 國家의 管理에 參加하며 각종 經濟事業과 文化事業의 管理에 參加하며 國家機關과 事業人員을 감독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

第18條 國家는 社會主義制度를 保衛하며 叛國的이고 反革命的인 모든 活動을 鎮壓하고 일체의 賣國 역적과 反革命分子를 처단하며 新生 資産階級分子와 기타 나쁜 分子를 처단한다.

國家는 法律에 의해 올바르게 改造되지 않은 地主·富農·反動資本家들의 政治權利를 박탈하며 同時에 生活의 出路를 부여하여 그들을 勞動 過程에서 法을 지키면서 자기의 힘에 의해 生活해 나가는 公民으로 되게끔 한다.

第19條 中華人民共和國의 武裝力은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 主席이 統率한다.

中國人民解放軍은 中國共產黨이 領導하는 工農 子弟兵이며 無產階級獨裁의 柱石이다. 國家는 中國人民解放軍의 革命化·現代化建設을 적극 강화하며 民兵 建設을 강화하고, 野戰軍·地方軍·民兵 三結合의 武量力 體制를 실시한다.

中華人民共和國 武裝力の 根本 任務는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保衛하며 國家의 主權·領土保全과 安全을 保衛하며 社會

帝國主義·帝國主義 및 그 走狗들의 顛覆과 侵略을 防禦하는 것이다.

第 2 章 國家機構

第 1 節 全國人民代表大會

第 20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最高國家權力機關이다.

第 21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省·自治區·直轄市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解放軍이 選出한 代表들로 구성한다. 代表는 民主的 協商을 거쳐 無記名投票 選舉에 의해 選出되어야 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每期的 任期는 5年으로 한다. 만약 특수한 事정이 있는 경우에는 該当期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任期를 연장하거나 次期 全國人民代表大會를 앞당겨 召集·開會할 수 있다.

全國人民代表大會 會議는 每年 1回 개최한다. 必要한 경우에는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第 22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다음과 같은 職權을 行使한다.

- (1) 憲法改正
- (2) 法律制定
- (3) 憲法과 法律의 實施 監督
- (4) 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의 提議에 의하여 國務院總理의 人選 決定

(5) 國務院 總理의 提議에 의하여 國務院의 기타 구성인원의 人
選決定

(6) 最高人民法院 院長 및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 選舉

(7) 國民經濟計劃·國家의 豫算 및 決算의 審査·批准

(8) 省·自治區 및 直轄市의 劃分 批准

(9) 戰爭과 平和의 問題 決定

(10) 全國人民代表大會가 응당 行使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기타
職權

第 23 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國務院의 구성인원과 最高人民法院 院長
및 最高人民檢察院 檢察長을 罷免할 權利를 갖는다.

第 24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常設機關
이며 全國人民代表大會에 대해 責任을 지고, 또한 事務報告를 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委員長, 副委員長 약간명, 秘書長,
委員 약간명의 人員들로 구성된다.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구성위원을 選
舉하며 또 罷免할 權限을 갖는다.

第 25 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職權을 行使
한다.

(1) 全國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主宰

(2) 全國人民代表大會 會議 召集

(3) 憲法과 法律의 解釋 및 法令制定

(4) 國務院·最高人民法院 및 最高人民檢察院의 業務 監督

- (5) 省・自治区・直轄市の 國家權力機關의 부적 당한 決議의 변경 또는 폐지
- (6) 全國人民代表大會 閉會 期間에 , 國務院 總理의 提議에 의해 , 國務院의 個別的 구성인원의 任免 決定
- (7) 最高人民法院 副院長 및 最高人民檢察院 副檢察長의 任免
- (8) 外國駐在 全權代表의 任免 決定
- (9) 外國과 締結한 條約의 批准과 廢棄 決定
- (10) 國家의 榮譽 稱呼의 授與에 관한 規定과 決定
- (11) 特赦 決定
- (12) 全配人民代表大會 閉會 期間에 만일 國家가 武裝侵犯을 받는 경우 戰爭狀態의 宣布 決定
- (13) 全國人民代表大會가 授與한 其他의 職權

第26條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委員長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會務를 主宰하고 外交使節을 授受하며 全國人民代表大會 或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定에 의하여 法律과 法令을 公布하며 外國駐在 全權代表들을 派遣하거나 召還하고 外國과 締結한 條約을 批准하며 國家의 榮譽 稱호를 수여한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委員長은 委員長의 職務를 協助하며 委員長의 部分的 職權을 代行할 수 있다.

第27條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는 必要에 따라 약간의 專門委員會를 들 수 있다.

第28條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國務院・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

및 國務院 各 部·各 委員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질문은 받은 機關은 반드시 責任지고 답변하여야 한다.

第29条 全国人民代表大会 代表는 原 選舉單位의 감독을 받는다.
原 選舉單位는 法律의 規定에 따라 自己가 選出한 代表를 수시로 召集할 權限을 갖는다.

第2節 國務院

第30条 國務院, 즉 中央人民政府는 最高國家權力機關의 執行機關이며 最高國家行政機關이다.

國務院은 全国人民代表大会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全国人民代表大会 閉會 期間에는 全国人民代表大会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第31条 國務院은 總理, 副總理 약간명, 各 部 部長, 各 委員會 主任의 人員들로 構成한다.

總理는 國務院의 事業을 주관하며, 副總理는 總理의 事業을 協助한다.

第32条 國務院은 다음과 같은 職權을 行使한다.

- (1) 憲法·法律 및 法令에 의해 行政措置를 規定하며 決議와 命令을 發布하고 또한 決議와 命令의 實施 狀況을 審査
- (2) 全国人民代表大会 또는 全国人民代表大会 常務委員會에 대해 議案 提出
- (3) 各 部, 各 委員會 및 기타 所屬機構의 事業을 統一的으로

領導

- (4) 全國 地方 各級 國家行政機關의 事業을 統一的으로 領導
- (5) 國民經濟計劃과 國家豫算의 編成과 執行
- (6) 國家利益 保護, 社會秩序 維持, 公民의 權利保障
- (7) 自治州, 縣, 自治縣, 市의 劃分 批准
- (8) 法律의 規定에 의해 行政人員을 任免
- (9)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가 부여한 기타 職權

第3節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와 地方 各級 人民政府

第33條 中華人民共和國의 行政區域은 다음과 같이 区分한다.

- (1) 全國을 省, 自治區, 直轄市로 나눈다.
- (2) 省, 自治區를 自治州, 縣, 自治縣, 市로 나눈다.
- (3) 縣, 自治縣을 人民公社, 鎮으로 나눈다.

直轄市와 비교적 큰 市를 區, 縣으로 나눈다. 自治州를 縣, 自治縣, 市로 나눈다.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은 모두 民族自治地方이다.

第34條 省, 直轄市, 縣, 市, 市管轄區, 鎮에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를 設立한다. 人民公社에는 人民代表大會와 管理委員會를 둔다.

人民公社의 人民代表大會와 管理委員會는 基層政權組織이며 또한 集體經濟의 領導機構이다.

省, 人民政府는 地区에 따라 行政官署를 설치하여 自体的 派出 機構로 할 수 있다.

自治区, 自治州, 自治県에는 自治機關을 설치한다.

第 35 条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모두 地方의 國家權力機關이다.

省, 直轄市, 그리고 区를 설치한 市의 人民代表大會代表는, 한급 (級) 아래의 人民代表大會에서 民主的 協商을 거쳐 無記名投票로 選舉한다. 県, 区를 설치하지 않은 市, 市管轄区, 人民公社, 鎮의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選舉民들이 民主的 協商을 거쳐, 無記名投票로 直接選舉한다.

省, 直轄市의 人民代表大會 每期の 任期는 5年으로 한다. 県市, 市管轄区의 人民代表大會의 每期任期는 3年으로 한다. 人民公社, 鎮의 人民代表大會 每期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県과 県 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常務委員會를 두는데 이것은 本級 人民代表大會의 常設機關으로, 本級 人民代表大會 앞에 責任을 지고, 또한 事業을 報告하며 그 組織과 職權은 法律에 의해 規定한다.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 會議는 每年 적어도 한번씩 거행하여야 하며 県과 県 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 會議는 本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의해 召集되고 人民公社, 鎮의 人民代表大會 會議는 人民公社 管理委員會와 鎮人民政府에 의해 召集된다.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 代表의 選舉單位와 選舉民은 自己가

選出한 代表를 監督하며 法律의 規定에 따라 隨時로 召還할 權利를 갖는다.

第 36 条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該當 行政區域 內에서 憲法·法律·法令의 遵守와 執行을 保證하고 國家計劃의 執行을 保證하며 地方의 經濟建設·文化建設 및 公共事業을 計劃하고 地方의 經濟計劃과 豫算·決算을 審査·批准하며 公共財産을 保護하고 社會秩序를 維持하며 公民의 權利를 保障하고 少數民族의 平等한 權利를 保障하며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의 發展을 促進한다.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法律에 規定된 權利에 의하여 決議를 通過시키고 發布할 수 있다.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本級 人民政府의 구성인원을 選舉하며 罷免시킬 權限을 갖는다. 縣과 縣 以上의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는 本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구성인원과, 本級 人民法院 院長 및 本級 人民檢察院 檢察長을 選舉하며 罷免시킬 權限을 갖는다.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 代表는 本級 人民政府, 人民法院, 人民檢察院 및 人民政府 所屬機關에 대해 質問할 權利가 있다. 質問을 받은 機關은 반드시 責任을 지고, 答辯하여야 한다.

第 37 条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地方 各級 人民代表大會의 執行機關이며 地方 各級 國家行政機關이다.

地方 各級 人民政府의 組織은 法律에 의해 規定된다.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本級 人民代表大會의 決議와 上級 國家行政機關

의 決議 및 命令을 執行하며, 県과 県 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本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議를 執行한다.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法律에 規定된 權限에 따라 本 行政區域의 行政事業을 管理하고 決議와 命令을 發布한다. 県 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法律의 規定에 따라 國家機關의 事業 일꾼을 任免한다.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本級 人民代表大會와 上一級 國家行政機關 앞에 責任을 지고 事業을 報告하며, 県과 県 以上の 地方 各級 人民政府는 本級 人民代表大會 閉會 期間에 本級 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앞에 責任지고, 事業을 報告하며 모두 國務院의 統一的 領導를 받는다.

第4節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

第38條 自治區, 自治州, 自治縣의 自治機關은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이다.

民族自治地方의 人民代表大會와 人民政府의 選出, 任期, 職權 및 派出機構의 設置등은 應당 憲法 第2章 3節에 規定된 地方 國家機關의 組織에 관한 基本原則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 民族이 居住하고 있는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에서는 有關 各民族에 모두 적당한 數의 代表가 있어야 한다.

第39條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憲法에 規定된 地方 國家機關의 職權을 行使하는 이와에도 法律에 規定된 權限에 의하여 自

治權을 行使한다.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當該 地方民族의 政治·經濟 및 文化의 特性에 비추어 自治條例와 單行條例를 制定할 수 있으며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에 報告하여 批准을 求할 수 있다.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은 職務를 執行할 때 現地 民族이 通用하는 1種 或은 數種의 言語·文字를 使用한다.

第40條 各 上級 國家機關은 应当 各 民族自治地方의 自治機關이 自治權을 行使하도록 充分히 保障하며 各 少數民族의 特性과 需要를 充分히 고려하고 各 少數民族 幹部를 힘써 양성하며 各 少數民族이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進行하고 社會主義經濟와 文化를 發展시키도록 積極 支持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第5節 人民法院과 人民檢察院

第41條 最高人民法院, 地方 各級 人民法院 및 特別人民法院은 裁判權을 행사한다. 人民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規定한다.

人民法院은 案件 裁判에서 法律의 規定에 좇아 群衆代表가 參加하는 審制度를 실시한다. 重大한 反革命事件과 刑事事件에 대해서는 群衆을 動員하여 討論하고 處理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人民法院은 法律에 規定된 特別한 경우 以外에는 裁判을 一律的으로 公開하여 進行한다. 被告人은 辯護를 받을 權利를 갖는다.

第 42 条 最高人民法院은 最高裁判機關이다.

最高人民法院은 地方 各級 人民法院 및 特別人民法院의 裁判事務를 監督하며 上級 人民法院은 下級人民法院의 裁判事務를 監督한다.

最高人民法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地方 各級 人民法院은 本級 人民代表大會와 그 常務委員會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第 43 条 最高人民檢察院은 國務院 所屬 各 部門, 地方 各級 國家機關, 國家機關 事務要員 및 公民이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는가 여여부에 대하여 檢察權을 行使한다. 地方 各級 人民檢察院과 特別人民檢察院은 法律에 規定된 범위에 좇아 檢察權을 행사한다. 人民檢察院의 組織은 法律로 規定한다.

最高人民檢察院은 地方 各級 人民檢察院과 特別人民檢察院의 事業을 領導하며 上級 人民檢察院은 下級 人民檢察院의 事業을 領導한다.

最高 人民檢察院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地方 各級 人民檢察院은 本級 人民代表大會와 그 常務委員會 앞에 責任을 지며 事業을 報告한다.

第3章 公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第44條 滿18歲 以上の 公民은 누구나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갖는다. 法律에 의하여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剝奪 당한 자는 제외한다.

第45條 公民은 言論, 通信, 出版, 集會, 結社, 行進, 示威, 罷業의 自由를 갖으며, "大鳴, 大放, 大辯論, 大字報"를 運用할 權利를 갖는다.

第46條 公民은 宗教를 信仰할 自由와 宗教를 信仰하지 않으며 無神論을 宣傳할 自由를 갖는다.

第47條 公民의 人身自由와 住宅은 侵犯을 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公民은 人民法院의 決定 또는 人民檢察院의 批准을 거치고 또한 公安機關의 執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되지 아니한다.

第48條 公民은 勞動할 權利를 갖는다. 國家는 全體의 利益을 위하여 統一的으로 按排하고 同時에 個人의 利益도 考慮한다는 原則에 근거하여, 勞動就業을 按排하고 生産의 發展에 基礎하여 점차 勞動報酬를 높이며 勞動條件을 개선하고 勞動保護事業을 強化하며 集體福利를 擴大함으로써 公民이 이러한 權利를 享受하도록 保證한다.

第49條 公民은 休息할 權利를 갖는다. 國家는 勞動時間과 休暇

制度를 規定하며 勞働者들의 休息과 休養에 必要한 物質的 條件을 점차 補充함으로써 勞働者들이 이러한 權利를 享受하도록 保證한다.

第 50 條 勞働者는 年老하였거나 病이 있거나 또는 勞働能力을 喪失하였을 경우에는 物質的인 補助를 받을 權利를 갖는다. 國家는 社會保險, 社會救濟, 公費醫療 등의 事業을 점차 發展시킴으로써 勞働者들이 이러한 權利를 누릴 수 있도록 保證한다.

國家는 革命戰傷軍人과 革命烈士家族들의 生活에 關心을 기울이고 이를 保障한다.

第 51 條 公民은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갖는다. 國家는 各種 類型의 學校와 기타 文化教育施設을 점차 增加시키고 教育을 普及함으로써 公民이 이러한 權利를 享受하도록 保證한다. 國家는 特別히 靑少年의 健康한 成長에 關心을 둔다.

第 52 條 公民은 科學研究, 文學藝術創作 및 其他 文化活動을 進行할 自由를 갖는다. 國家는 科學, 教育, 文學, 藝術, 報道, 出版, 衛生, 體育 등 文化事業에 從事하는 公民의 創作事業에 대하여 장려하고 도와준다.

第 53 條 婦女는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및 家庭生活的 各方面에서 男子와 平等한 權利를 갖는다. 男子는 同一勞働에 同一報酬를 받는다.

男子의 婚姻은 自主的이다. 婚姻·家庭·白親 및 兒童은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國家는 人口計劃(生育計劃)을 提唱하고 推進한다.

第 54 条 國家는 華僑와 그 가족의 正當한 權利와 利益을 保護한다.

第 55 条 公民은 法律을 違反하거나 職責을 다하지 아니한 어떠한 國家機關과 企業, 事業單位의 從事人員에 대해서도 各級 國家機關에 告發할 權利를 갖는다. 公民이 權利를 侵害받은 경우에는 各級 國家機關에 訴願을 제출할 權利를 갖는다. 이러한 告發과 訴願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도 抑壓하거나 報復하여서는 안된다.

第 56 条 公民은 반드시 中國共産黨의 領導를 擁護하고 社會主義制度를 擁護하며 組國의 統一과 各 民族들간의 團結을 維持하며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 57 条 公民은 公共財産을 愛護하고 保衛하며 勞動紀律을 遵守하고 公共秩序를 遵守하며 社會道德을 尊重하고 國家의 機密을 지켜야 한다.

第 58 条 祖韓을 保衛하며, 侵略에 抵抗하는 것은 모든 公民의 崇高한 職責이다.

法律에 의하여 兵役에 복무하며 民兵組織에 參加하는 것은 公民의 榮光된 義務이다.

第 59 条 中華人民共和國는 正義의 事業을 擁護하거나 革命運動에 參加하거나 科學事業을 進行하다가 追害를 받는 어떠한 外國人에 대해서도 居留할 權利를 준다.

第 4 章 国旗, 国章, 首都

第 60 条 中華人民共和国의 国旗는 五星紅旗이다.

中華人民共和国의 国章은 中央에 5개의 별(五星)이 비쳐주는 天安門이 있고 周圍는 곡식의 이삭과 톱니바퀴로 되어있다.

中華人民共和国의 首都는 北京이다.